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

저작권 아카데미 표준 교재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비매품
9 788961 200363
ISBN 978-89-6120-036-3
ISBN 978-89-6120-033-2 (세트)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

집 필 최종철(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문항 개발 심동섭(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감 수 이상정(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 행 일 2009년 9월 30일
발 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자인·제작 (주)이팝 (t.02-514-7567)
인 쇄 대한인쇄사 (t.02-2279-7834)

ISBN 978-89-6120-036-3 94010
ISBN 978-89-6120-033-2 (세트)

본 교재는 집필자의 견해를 존중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상의 견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



CONTENTS

I. 저작권법 개요

1. 저작권법의 목적	16
2. 저작물	16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7
4. 저작자	17
5. 저작자의 권리	17
6. 저작권의 발생	18
7. 저작권의 법적 성질	18
8. 저작권의 양도성	19
9. 저작재산권의 제한	19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20
11. 법정허락제도	20
12. 저작권의 등록	20
13. 저작인접권	21
14. 침해 구제	22

II.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저작권과 저작물

00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25
002.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나?	26
003. 창작성의 수준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26
004. 보호받는 저작물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27
005.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29
006. 반사회적인 저작물의 보호 여부 반사회적인 내용의 창작물도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30
007. 저작권의 표시 반드시 저작권을 표시해야 보호받는가?	31
008.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자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 저작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32
009.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2

온라인상 전송

010. 온라인 전송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발제자 등에게 원고를 모두 수합하여 책자로 발간했는데 책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요청하는데, 전송해 주어도 되나?	35
011. 게시판 담당자의 책임 ① 모 부처 홈페이지 담당자이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누군가가 유료 소프트웨어를 업로드 해 놓았고 하루 사이에 수백 건의 다운로드가 행해졌다. 이를 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는데 게시판 운영자로서 불법복제물이 업로드 된 것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부처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나?	36

012. 게시판 담당자의 책임 ②
저작권법이 바뀌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우리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경우 홈페이지가 폐쇄될 수도 있는가? **38**

013. 온라인 웹진 발간
모 부처 소식지 담당자이다. 주로 원고료를 주고 외부 필진의 원고를 사용하여
소식지를 만들고 있다. 이를 웹진 형태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더니
외부 필진 중 일부가 반대하였다. 이미 원고료를 다 주었는데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할 수 없나? **39**

소유권과 저작권

014. 소유 건축물과 저작권
우리 부처 청사는 건축상을 휩쓸 정도로 유명한 건축물이다. 이 건물을
배경으로 하여 광고가 상당히 많이 제작되어 방영 중인데, 저작권을 이유로
광고 배경사진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 **40**

015. 소장 작품과 저작권
공공 미술관 직원이다. 관람객들이 전시 관람 중 사진을 찍곤 하는데
제지하기가 참 난감하다. 전시 중인 작품의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41**

016. 소장품의 소유권과 전시
우리 부처에서 오래전부터 소장해오던 미술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모 작품의 작가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였다. 우리 부처의 소장품인데 우리가
맘대로 전시하지 못하냐? 사전 허락없이 전시하면 어떻게 되냐? **42**

출판권

017. 출판권의 의미
출판권이란 무엇인가? **43**

018. 판권과 출판권
보통 판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판권과 출판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44**

019. 레이아웃과 저작권
모 출판사와 연간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다.
레이아웃도 산뜻하고 해서 호평 받고 있는데, 내부 사정으로 다른 회사에
출간을 맡기려고 한다. 하지만 처음 출간하던 회사에서 레이아웃은
자신들이 창작했다면서 다른 회사에서 출간하려면 레이아웃 전체를
바꾸라고 한다. 레이아웃도 저작권이 있는가? **45**

020. 출판권의 범위
정부 홍보물을 출판하는 부서이다. 모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성장과
관련한 자료의 작성을 의뢰하여 출판권을 설정 받았다. 해당 홍보 책자
발간 후 상관의 지시에 의해 이를 CD와 DVD로 만들려고 계획하였는데,
필자의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출판권을 설정 받았는데 책자 외에 CD 등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 **46**

021.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부서장 지시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제 서적의 내용을 온라인교재로
재구성하여 활용하려고 한다. 이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출판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48**

022. 무권리자의 이용허락
정부 자료를 A출판사에 의뢰하여 판매책자로 발간하였다. 이후 A출판사는
정부의 허락도 없이 일정 금액을 받고 해당 원고를 월간지에 게재하였다.
이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48**

023. 출판물의 수정·증감
사계 권위자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전통 공연 관련 책자를 발간하였다.
반응이 좋아 2판을 찍으려다 시의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어 수정하고
내용을 조금 보충하였다. 이를 안 해당 필자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항의해
왔는데 출판권을 가진 곳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49**

024. 출판계약시 주의점
공무원 발령 첫 임무로 출판계약이 맡겨졌다.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
기본 출판계약서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50**

저작권의 제한 등

025. 행정목적을 위한 복제
행정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출판된 책을 10부 복사하여 간부회의에
올렸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출판사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입법, 행정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게 아닌가? **51**

026. 정부 발간 보고서의 저작권
산하단체에서 매년 다수 연구용역을 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상급
부처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다. 어떤 사설 연구소에서 이 보고서를
출력하여 내부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설 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그 산하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기관 등이 출판하는 책자 등의
저작권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53**

027. 의회 등에서의 연설
시 의회 의원이다. 모 출판사가 시 정기 의회에서 내가 한 발언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한 것을 보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행정적인 자료는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가? **54**

028. 무료 공연과 저작권
우리 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음악 공연단이 시민을 위해서 길거리
음악 공연을 하였다. 해당 노래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해 왔는데 무료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주어야 하는가? **55**

029. 무료 영화상영과 저작권
시민을 위해 매주 1회씩 DVD를 이용하여 강당에서 영화감상회를 갖고 있다.
어떤 영화사에서 대중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익을 제기했다. 공짜로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인데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 **57**

030. 출판서적의 요약 공무원들의 업무지식 향상을 위해 내부 동아리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업무 관련서적을 요약·발표하고 있다. 일부 요약서가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사되어 배포되곤 하는데 출판사가 이익을 제기해왔다. 행정목적에 위해 사용하는데 요약서를 배포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	58
031.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복사기 사용료 우리 부처는 복사기를 300대 정도 운용하고 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라는 단체에서 공중의 이용에 사용하는 복사기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용료 지급 요청을 했다. 행정부처의 복사기는 행정목적에 위한 사용이므로 사용료를 면제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59
032. 사무실 등의 음악 사용 모 부처 총무과 직원이다. 화장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오래된 고전 노래로 하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반대해서 최신 가요가 나오도록 하였다. 음악은 개개 화장실의 기계장치에 MP3파일로 들어가 있으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음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61
033. 판매용 CD의 방송 공공 미술관 관계자이다. 미술관에서 관람객 편의를 위해 매일 점심때에 CD를 이용하여 음악을 틀고 있다. 옆에 있는 경마장 직원에 의하면 경마장에서는 CD 음악을 트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미술관은 괜찮은지 궁금하다.	62
034. 영화제목과 저작권 모 부처 홈페이지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사교육이 화두라서 홈페이지 일부내용을 사교육과 공교육 부분으로 채우면서 그 제목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로 하려고 한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영화제목 이라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지 걱정하는데 사용해도 되는가?	63
035. 저작물의 자유이용 우리 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중 일부는 네티즌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 싶다. 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65
036. 판결과 저작권 법원 공무원이다. 누군가 법원 판결을 그대로 복제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판례도 판사들이 고심 끝에 내어놓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 판결에 도달하기 위해 만든 감정서 등도 저작권이 있는가?	66
037. 도서관에서의 복제 도서관 사서이다.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일정부분 저작권법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책 전체를 복사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의 책 분량을 복사하여야만 책임이 없는지 궁금하다.	67
038. 학교에서의 영화상영 모 중학교 교사이다. 기말시험이 끝난 후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져온 DVD 영화를 틀어주려고 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 교육목적상 필요할 경우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Divx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TV로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가?	69

039.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 학교 선생님이다. 수업을 위해 참고서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가? 저작권법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복사를 허용하고 있는가?	70
040. 교육목적을 위한 전송 학교 선생님이다. 수업을 위해 같은 반 학생들의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여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하였는데 하는데 교육목적이므로 시중의 온라인 자료를 올려도 상관없지 않나? 반 학생들 외에 부모님들도 해당 카페에 들어올 경우 수업목적의 전송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도 알려 달라.	71
041. 시험문제 출제 인사 담당 부서의 직원이다. 직원 채용을 위해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온 현대소설 지문을 그대로 써서 문제를 만들어도 되는가?	72
042. 직장 내 교육목적 사용 A부처 교육담당자이다. 아침마다 하는 청사 내 영어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영어교재의 일부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이므로 허용되지 않는가?	73
043. 인용과 저작권 정부 비판내용을 주로 신는 매체의 기사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기사 내용을 1/2정도 싣고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하단에 게재한 후 홍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해당 매체에서 아무리 비판을 위해서지만 자신들 기사의 1/2을 무단으로 실은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제소 의사를 밝혔는데 적절한가?	74

저작권의 귀속 주제

044. 연구용역 보고서의 저작권 우리 기관의 주관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맺어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중 일부 내용을 행정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내부 보고서에 인용하였는데 해당 연구를 담당한 기관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우리 기관이 연구용역 대가를모두 지급했으므로 저작권은 우리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닌가?	76
045. 기증품의 저작권 시 산하 미술관이다. 모 유명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다수 기증하였다. 작가의 사후에 기증 도록집 발간을 준비 중인데 후손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걸어 반대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나?	78
046. 전송 이야기 녹취물의 저작권 우리나라 전송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남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그 지방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육성을 녹음하여 온 후 나중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출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저작권 위반을 거론하면서 못하게 하는데, 이미 전송되어 오는 다 알려진 내용이니만큼 저작권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79

047. 국고보조금으로 만든 저작물
모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 포스터가 너무 훌륭하여 우리 부처 홍보지 전단에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단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항의해 왔다. 우리 부처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100% 만든 포스터인데 우리가 다시 일일이 허락받고 사용해야 하나? **80**

048. 공모전과 저작권
시정 홍보를 위해 우리 시의 관광사진전 공모를 준비 중이다. 공모 당선작은 추후에 우리 부 홈페이지나 전단 등에 사용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모가 끝난 후 우리 시가 당선작의 저작권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 **81**

2차적저작물 작성

049. 통역녹취물의 저작권
국제 학술행사를 위해 국내 모 업체에 통역을 의뢰하였다. 학술발표 내용을 현장에서 즉시 통역하면서 해당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행사 종료 후 통역내용을 녹취하여 보고서로 발간하려고 했더니 해당 업체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라고 하면서 추가의 금액을 요구하였다. 이미 통역료를 다 지급하였는데 돈을 더 주어야 하나? **84**

050. 판매서적의 번역
우리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 유명 문화인사의 책을 번역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해당 책을 번역 출판하려는 출판사가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책을 복제한 것도 아니고 번역해서 내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85**

업무상 저작물

051. 퇴사 후 저작권의 귀속
내부 소식지 발간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소식지의 성격상 본인이 쓰는 글이 상당수에 달한다. 퇴사후 그동안 소식지에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려고 했더니 이전에 근무하던 부처에서 저작권법 위반 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내가 쓴 글인데 이전 부처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86**

052. 업무상 찍은 사진의 저작권
서울시 소속 사진사이다. 업무상 여러 사진을 찍는데 그중 한 장을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당선되었다. 시 총무과에서 직원이 업무상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시에 귀속되므로 개인자격으로 출품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데 타당한가? **88**

저작인격권

053. 저작인격권의 정의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88**

054. 저작 인격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89**

055. 작품의 변형
모 부서 총무과 직원이다. 건물을 돋보이게 하라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작가에게 설치 미술품을 의뢰하여 현관 앞 건물 벽에 설치하였다. 직원들이 그 설치물에 시계도 같이 넣으면 편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총무과에서 설치미술품 안에 디지털 시계를 고정하여 넣었다. 이를 본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 했다. 설치미술품은 건드리지 않고 훼손도 안 시켰는데 저작권법 위반인가? **91**

056. 책자 발간을 위한 사진의 변형
우리 부서에서 행정업무편람 책자를 만들면서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진의 일부를사용하려고 한다. 부서장이 사진의 배경색깔이 책자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포토샵을 이용하여 배경색깔을 바꾸라고 하는데 가능한가? **92**

057. 소장 조각품의 수선
청사관리 담당 직원이다. 순찰을 돌다 보니 주차장에 놓여 있던 조각 작품의 머리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용접업체를 불러 다시 붙였다. 누군가가 저작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침해되는지 궁금하다. **93**

058. 정부 보고서의 저자 누락
정부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면서 실수로 외부 필진 한 명의 이름을 누락하였다. 원고는 실렸으나 이름은 없는 상태인데, 해당 필자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 **94**

059. 공동저작물의 공표
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의 연구결과 발표를 같은 날 같이 하기로 했으나 그 연구기관에서 먼저 발표를해버렸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95**

060. 저작물의 변형
미술관 관계자이다. 어린이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 소장작품의 인물 배경만 남기고 색을 없앤 다음 어린이들이 칠하도록 교재를 만들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96**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

061. 공연 내용의 온라인서비스
시로 승격한 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명 공연단을 초청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 행사를 열었다. 이 공연을 보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홍보과에서 공연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려서 서비스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공연단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 시에서 공연비용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저작권 위반인가? **97**

062. 공연 내용의 실황 중계
외국 유명 공연단을 초청하여 시 문예회관에서 무료로 공연 중이다. 문예회관 객석 수가 너무 적고 공연을 보려는 사람도 많아서, 외부에 대형 멀티화면을 설치하고 공연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데 외국 공연단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항의하는데 정말 저작권 위반인가? **98**

063. 길거리 응원과 저작권

시청 직원이다. 국민의 월드컵 응원 편의를 위해 시청 광장에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하고 방송화면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정말 저작권법 위반인가? 또 대기업에서 응원단에게 음료수와 응원용품 등을 나누어주면서 길거리 응원을 조직하면 어떤가?

99

064.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시가 해온 각종 성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기자브리핑도 가졌다. 다음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의 '시정 발전란'에 올렸는데 여러 신문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해 왔다. 우리 시가 제공한 자료의 대부분이 그대로 나온 기사인데 해당 기사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100

065. 게시판 글의 저작권

시 홈페이지 담당자이다. 우리 시의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정발전의 주요 지적사항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자 한다. 이 경우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글들도 모두 글을 쓴 민원인에게 일일이 동의를 얻어 출판해야 하는가?

101

066. 정부 홈페이지 링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관광정보를 모아 서비스하고 있다. 관광정보를 모아 영리적으로 서비스하는 모 홈페이지를 보았더니 우리 시 홈페이지 해당 정보를 링크해서 걸어 놓아 유적지 아이템을 클릭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가 뜨면서 우리 시 홈페이지의 해당 정보가 나타나게 해 놓았다.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

102

067. 계약과 저작권

A디자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리 기관 홍보물을 만들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다음 해에 B회사에 홍보물 인쇄를 맡겼는데 A디자인회사에서 미술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한것이라며 위반이라고 항의를 해왔다. 이미 표지 디자인등의 금액도 다 지급했는데, A디자인 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나?

104

068. 신문 스크랩과 저작권

모 부처 공보관실 근무자이다. 우리 부처 관련 기사를 매일 스크랩한 후 복사하여 간부진에게 배포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는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 이를 JPG 파일로 만든 후 내부 폐쇄망에 매일 아침 올리거나, 특정 간부에게만 메일로 송부하려고 한다. 이 경우는 어떤가?

105

069. 공연과 저작권

시장의 지시로 사설 공연단에 공연료를 지급하고 매월 정기음악회를 열고 있다. 곡목은 슈베르트의 곡에서부터 최신가요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최신가요의 작곡가가 허락 없이 자신의 곡이 연주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해왔다. 과연 저작권법 위반인가? 위반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이미 출연료를 지급했으므로 작곡가와와의 문제는 공연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106

070. 통계와 저작권

통계를 담당하는 부처이다. 우리 기관에서 만든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업체에서 상당 부분 인용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다. 해당 출판사는 공정한 이용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통계 정도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107

071. 신문기사와 저작권

정부 홍보지를 만들면서 출처를 명시하고 모 신문사 기사 한 줄을 사용하였다. 한 줄 정도이고 출처까지 명시했으므로 문제없는 건 아닌가?

108

072. 저작자 허락 없는 기사 작성

모 부처 공보관실 근무자이다. 주요한 정부정책 보도자료를 작성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 신문사 기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해당 자료를 필사한 후 이를 다음날 1면 톱으로 기사화하였다. 보도 자료를 정식으로 배포하기 전이므로 해당 기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

109

073. 보도자료와 저작권

공보관실 직원이다. 보도자료와 함께 사진 몇 장을 같이 배포하였다. 모 언론사는 해당 행사 기사에 사진을 사용한 후 회사 DB에 올려놓고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이후의 다른 기사에 사용하곤 하는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110

074. 착오로 인한 이용허락

모 단체에서 『한국의 공영 문화』라는 책자 발간을 요청해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를 넘겨주었다. 출판 후에 그중 일부 사진 등이 정부가 저작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모 단체는 정부를 신뢰하여 책을 출판했다고 하면서 면책을 주장하고,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정부보다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111

075. 이중허락

정부 홍보물을 만들면서 A출판사로부터 독점적인 이미지 공급계약을 맺었다. 홍보전단이 완성되어 배포되는 시점에 일반 기업체인 B사가 신문에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 공익광고를 실은 것이 발견되었다. 알아보니 A출판사가 정부와 독점계약을 맺고 나서 B사와 다시 일부 이미지의 이용허락을 한 것이었다. 이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112

076. 감수자의 권리

공보관실에 근무하면서 기관장의 측사 등을 윤문하거나 감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 출판물의 발간 시에도 감수하고 있다. 감수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113

077. 청탁 원고의 재이용

정부 소식을 발간하고 있다. 외부 필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3월호 소식지에 게재하였는데 다른 부처에서 그 내용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게재 요청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5개 부처의 소식지에 같은 글이 실렸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114

078. 로고송

기존 음악을 짜깁기해서 부처 로고송을 새로 만들려고 전문업체에 의뢰했더니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왔다. 부처 내 음악을 전공하던 직원이 있어서 로고송 제작을 맡기려고 하는데 음악저작권자 등에게 별도로 권리 허가를 받아야 하나?

115

079. 소장품의 이미지 서비스

미술관 관계자이다. 소장 작품의 일부가 저작권 협의가 안 되어 아주 흐린 이미지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고화질 파일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116

080. 전시회 도록 발간

우리 부처 소장의 작품을 가지고 자그마하게 식당에서 전시회를 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팸플릿 형태의 화보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117

081. 행정 보고서의 사진 사용

건설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PPT를 만들면서 인터넷상의 건축사진 몇 개를 삽입하였다. 나중에 이를 안 해당 사진작가가 이의를 제기해왔다. 간부진 몇 사람에게만 보고한 단순 보고서이고, 행정목적에 위한 것인데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

117

082. 행정정보공개와 저작권

시에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어떤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를 하면서 이미 신청한 다른 업체의 건축신청 관련사항을 요청하였다. 정보공개를 할 경우 다른 업체의 건축도면 등도 복제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 도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 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문서등을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나?

119

083. 축탄 사진과 저작권

정부광고를 찍기 위해 외부 전문 사진가를 불러 우리 부 청사 사진을 찍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나중에 외국의 다른 부처와 자매결연식이 있어서 해당 사진을 보내고, 그 외국 부처와 우리 부 소식지에도 실었는데 사진작가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제소한다고 한다. 그 사진 저작권은 우리 부가 가지는 게 아닌가?

120

084. 유족의 승인

공공 미술관 관계자이다. 전시회의 작품 이미지 컷 사용을 위해 작고한 작가의 유족에게 이용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유족이 너도나도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122

저작권의 보호기간

085.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보호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가?

123

086. 보호기간이 다른 외국 저작물 사용

산하 미술관에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이미지 사진을 이용하여 도록을 출판하려고 한다. 전시 작품의 작가는 50년 전에 작고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자기 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다른 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충돌할 때 그 나라의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나?

124

법정허락

087.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 사용

환경 관련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부서장이 10년 전에 출간된 외래어종의 폐해에 관한 외국서적과 국내서적을 주면서 책자 발간을 협의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출판사 등을 통해서 해당 저작자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이 경우 책자를 발간하는 방법이 있는가?

125

088. 사망자의 저작물 사용

꽃 박람회에서 희귀 꽃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금강산에서 찍은 희귀 사진이 주요 전시품이다. 하지만, 그 사진작가가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도 찾을 길이 없는데, 이 경우 전시할 방법이 없는가?

126

외국 저작물

089. 보호되는 외국 저작물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27

090. 북한 저작물 사용

통일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 문학서적을 짜집기하여 책자로 발간한 후 교육교재로 사용하려고 한다. 북한과는 저작권 교류가 어려운 만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그냥 써도 되지 않나?

128

저작재산권의 소멸

091. 부처 폐지와 저작권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부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 경우에 우리 부처가 가지고 있던 각종 보고서 등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

129

초상권/퍼블리시티권

092. 초상권과 저작권

우리 부처의 홍보대사로 유명 연예인을 초빙하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도중 부처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우리 부처의 홍보 전단에 사용하였는데 그 연예인 기획사에서 초상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다. 우리 사진사가찍은 사진이므로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것인가?

130

패러디

093. 패러디와 저작권

우리 부처 업무에 불만을 품은 네티즌이 우리 부처 홍보 포스터의 일부분을 개작하여 온라인에 올렸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패러디이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러디는 면책되는가?

132

침해구제

094. 민사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34

095. 형사적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35
096. 저작권 중재 민·형사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가?	137
097. 침해구제 조치 모 부처 계약 담당 직원이다. 모 출판사에서 우리 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여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 우리 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38
098.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발 여부 우리 부처에서 보고서 책자 발간 중 실수로 외부 발간 책자의 내용이 일부 그대로 들어가 버렸다. 이를 안 저작권자는 행정상의 실수라고 하면서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고발한다고 한다. 저작권 침해도 당사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가?	138
099. 저작권법 위반과 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 외에 형사기관의 직접 인지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139
100. 불법 복제 프로그램사용과 기관장 책임 모 정부 사업소 기관장이다.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쓰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에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발견되어 해당 소프트웨어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경우 해당 직원만 처벌받는지, 당해 기관장도 같이 처벌받는지 궁금하다.	141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저작물

가. 정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나. 저작물의 종류

-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저작물의 예시

범 주	장르·종류 등
어 문	소설·매뉴얼, 시, 논문·텍스트, 강연·연설·설교, 각본, 캐릭터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기악·성악, 창극, 오페라(작사·작곡·편곡)
연 극	연극, 무언극, 무용극, 창극, 오페라
미 술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조각·판화, 공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 모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캐릭터
영 상	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임(화상이 나오는 것), 광고, 애니메이션
도 형	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모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컴퓨터 작동용)
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각색, 시나리오, 영상제작(영상화), 변형
편 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팸플릿·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창작성이 있는 것), 홈페이지, 광고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과 같은 저작물은 비록 창작성이 인정되어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하였으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위에서 열거된 3가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4.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개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단체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한다.

5.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명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가.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저작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권리가 포함됨

- 공연권 :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등을 상연이나 상영, 연주, 가창, 구연, 연설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 전시권 :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6.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를 '무방식주의' 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다르다.

7. 저작권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준물권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권리자 외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용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8. 저작권의 양도성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로서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하며, 저작인격권 자체는 상속도 불가하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인정되었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등 인격적 이익을 청구할 권리가 유족에게 인정된다.

9.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오히려 학문 및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것을 바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판절차, 입법 및 행정 목적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 등의 이용(제24조)
- 학교 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간접적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등을 다른 언론 기관에 의한 복제(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공연·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 등에 의한 소장 자료의 복제·전송(제31조)
- 저작물을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의 점자 등으로의 복제·전송(제33조)
-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저작물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위와 같은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번역·편곡·개작 이용(제36조)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법인 등이 저작자인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11.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신청(법정허락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내국인이 저작권자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이며, 외국인이 저작권자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은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없다. 즉, 외국인 저작물 등은 해당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법정허락 관련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12.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 등록에 따른 일정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받는다. 예컨대,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추정을 받으며, 등록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 받게 된다.
-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침해 행위에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침해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의 설정과 설정출판권의 양도 등에 있어서는 등록된 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등기와 유사한 제도이다.

13. 저작인접권

가. 개념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나.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구연·낭독·연주·가창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탤런트, 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곡예사 등)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함
- 음반제작자 : 음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실연자
 -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실연의 영리 목적을 위한 대여권, 생실연의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실연이 수록된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판매용 음반의 영리 목적을 위한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이러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준하여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성을 위하여 그 권리가 제한되며,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기도 된다.

라. 보호기간

- 실연 :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
- 음반 :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50년
- 방송 :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14. 침해 구제

가. 원칙

저작권 침해에 당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 구제가 가능하다. 민사 구제와 형사 구제는 동시에 혹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나. 민사 구제

- 민사 구제는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치이다.
- 이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도 민법에 의하여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 형사 구제

- 형사 구제는 저작권자가 고의에 의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수사당국에 소추(訴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다.

00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이란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이다?!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실이다. 특히 문화산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인식이 없으면 사업 자체를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도 사실이다.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각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처럼 저작권이 다양한 권리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권리의 다발’이라고도 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은 각각의 권리가 기술 등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입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 출현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권리가 주어질 것이다. 저작권법상에서 저작권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저작권이 기술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확장되고 변화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이외의 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영상저작물 이용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출판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저작자 이외의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또한 불변의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의 경우 저작권과는 서로 구별되며 양자는 독립한 권리로서 별개로 존재하고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02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나?

● 저작권은 이를 보호함으로써 저작자나 저작물의 유통사업자 등에게 저작물의 시장에서 누군가 그 저작물에 무임승차(free ride)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거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 입장에서 법률로 부여한 권리이다.

최근 저작권의 역할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문화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장치이다.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문화콘텐츠 제작회사의 직접적인 손실은 재투자의 여력을 삭감하고 결국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화산업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003

창작성의 수준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 저작권의 핵심은 창작성이다. 이 말은 꼭 기억하자. 하지만, 어느 정도가 창작성이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특허 등에서의 진보성이나 고도의 예술성과는 다른 것으로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의 창작성을 말한다. 이는 아주 낮은 수준의 창작성, 최소한의 창작성을 의미한다. 즉 유명 화가의 그림이나 유명 작가의 방송대본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나 일기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창작성이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있고, 다른 저작자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다만 건축저작물과 같이 기능적 성격을 가진 것일 경우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평면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평면도가 작성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8.24. 선고 2007도4848). 아울러 창작성은 다른 사람이 선행해서 만들지 않았어야 할 신규성과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이라 해도 그것에 의거하지 않고 별도로 창작하였다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충족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같은 저작물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004

보호받는 저작물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분설하면 첫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이 만든 것이거나 자연의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저작물이 아니며 기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둘째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의 개념과 정도는 전술한 바 있다. 셋째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표현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 가슴 속에만 있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아울러 표현된 것만을 보호하므로 그 속에 내재한 사상이나 아이디어

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분이나 경계의 설정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의 예를 들어보자. 기계를 만드는 것을 기술한 논문을 이용하여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한 행위는 논문의 복제, 즉 표현을 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분에 있어 다소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건축저작물의 문제이다. 건축저작물은 실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저작물의 도면도 건축저작물로 보며 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로서 성립함에도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30/2008043001593.html

태국에서는 코끼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이 그림은 고가에 팔리기도 한다. 조련사가 옆에서 물감을 찍어주면 코로 붓을 쥐고는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추상화는 물론 구상화까지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훈련에 의해 그려졌다지만 정작 붓을 쥐고 그리는 건 코끼리이다. 이렇게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태국에서는 코끼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이 그림은 고가에 팔리기도 한다. 조련사가 옆에서 물감을 찍어주면 코로 붓을 쥐고는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추상화는 물론 구상화까지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훈련에 의해 그려졌다지만 정작 붓을 쥐고 그리는 건 코끼리이다. 이렇게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005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 사람이 출생하면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 인권의 주체가 되듯이,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 라고 하는데 저작권 발생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는 베른 협약을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무방식주의 하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저작권 양도 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한편, 이외는 달리 저작권 발생에 있어 등록이나 납본 또는 © 표시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방식주의라 하는데 과거 미국이 이러한 방식주의를 취하였으나 197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무방식주의로 전환하였으며, 다만 등록과 납본을 소송 제기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무방식주의는 특허에서 등록을 특허권 발생의 요건으로 하는 방식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의 즉각적인 보호와 저작자에게 등록 등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저작권자 등 저작권 정보의 확보나 권리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등록을 저작권 발생의 요건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등록에 대하여 현행보다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 등록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006

반사회적인 저작물의 보호 여부

반사회적인 내용의 창작물도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하므로 저작물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법원에서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된다”(대법원 1990. 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볼 때 고등법원에서는 사진의 사진이 음란물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상에서 외국의 음란물을 공유한 사안과 관련 음란물 제작자 측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음란물에 대하여는 보호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둘 것으로 공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사회적인 저작물의 보호는 실제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을 기준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사례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의 경우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는 있으나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문이다. 저작권법과 국가보안법, 저작권법과 형법 등이 충돌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반사회적인 내용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의 보호와는 별개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란한 비디오물의 경우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

는 있겠으나 그러한 작품을 제작 유통하는 경우 형법상 음화제조 및 반포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부도덕하거나 위법할 부분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위법이 해소된 이후에야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007

저작권의 표시

반드시 저작권을 표시해야 보호받는가?

● 기본적으로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는다. 이는 국제 협약에 의해 인정된다. 베른 협약의 무방식주의다. 다른 원칙을 채택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서는 © 표시를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베른 협약과의 관계에 있어 베른 협약에 우선효력을 주어 효용성이 낮다.

저작물의 온라인상에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정보 등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참조할 만하다. 최근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표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008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자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 저작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주어지며 이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저작권이라는 넓은 범위 속에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나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작자뿐 아니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다.

즉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현대처럼 저작물의 산업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를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다면 저작재산권은 소멸하는 것으로(법제49조) 설령 저작자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작자에게 권리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009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저작권은 준물권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대표적인 거래의 형태로는 양도와 이용허락을 들 수 있겠다. 저작권의 양도는 권리의 중국적인 이전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도받은 사람이 온전히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용허락은 권리의 이전과는 관계없이 권리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하는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의 범위나 조건(내용, 시간, 장소)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전체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고 일부의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다. 저작권을 종과 횡으로 나누어서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거래의 복잡성이 초래된 측면도 있다. 저작권의 전체를 양도받거나 조건부로 양도받은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고,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며 권리 침해 시 권리자의 지위에서 법적 구제를 취할 수도 있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이외에 일반적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전부를 양도한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는다. 2차적저작물은 원작에 기초하나 원작과는 별개의 시장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는 별도로 양도의 효과를 주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물의 변형은 일상다반사이고, 이러한 변형이 초등 학생들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별도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저작물 이용허락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허락 계약으로는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을 수 있다.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이중 허락하는 것과 관련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이중 허락 시 저작권자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한편,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당사자 간에 녹음물의 이용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정하지 않고 '녹음물 일체'에 대하여 이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 관례와 LP음반 및 테이프에 대한 CD음반의 대체성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 대한 이용허락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다(대법원 1996. 7.30. 선고 95다29130). 결국, 이용허락의 범위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에 좌우되는 것이다. 살면서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이다.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시중에서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상에는 새로운 방법의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명기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사례

제4조(양도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에는 복제권, 출판권, 녹음권, 영화녹음권, 광고 녹음권, 연주권, 상연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대여권, 상영권, 번역권, 번안권, 편곡권 등 본 건 작품에 대하여 현재 부여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를 현재 알려져 있거나 또는 미래에 개발되는 모든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한편, 저작권법에 별도로 정한 독점적 이용허락의 형태로서 출판권설정이 있다. 출판권을 설정 받은 경우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설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출판권설정계약을 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적 이용허락과는 달리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하여 출판행위의 금지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 독점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중 설정 방지를 위해 등록을 해야 하는 바 출판권자의 이중 설정 시 나중에 설정받은 제3자가 먼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한다면 먼저 설정을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010

온라인 전송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발제자 등에게 원고를 모두 수합하여 책자로 발간했는데 책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요청하는데, 전송해 주어도 되나?

● 저작권법상 전송이라 함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저작물을 올려놓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전송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인용,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이 그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전송 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한편, 제시한 사례가 온라인상의 전송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메일 송부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되긴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것은 사실상 전송과 유사하므로 온라인상의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발송한 메일의 수량이나 메일 송수신자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발제자 등의 입장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발표 자료를 나누어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비록 오프라인상의 책자 인쇄가 예산 등의 사정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련 자료를 참석자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것은 애초 저작자가 의도한 자료의 배포에 해당할 것으로 권리자가 문제 삼을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메일로 전송받은 자가 이후에 대량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메일로 송부하더라도 추가적인 복제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011

게시판 담당자의 책임 ①

모 부처 홈페이지 담당자이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누군가가 유료 소프트웨어를 업로드 해 놓았고 하루 사이에 수백 건의 다운로드가 행해졌다. 이를 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는데 게시판 운영자로서 불법복제물이 업로드 된 것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부처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 간의 정보공유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정보 중에는 저작권 침해물도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되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 즉 자료실·게시판·방명록 등을 운영하는지 여부이고, 또 이것을 누가 운영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여기에 해당하고,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미니홈피나 카페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될 수 있다.

저작물의 온라인서비스와 관련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될 때에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불법으로 게재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불법으로 저작물을 게재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한 때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제·전송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대체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불법으로 게재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방치하면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의 특성상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경우 사실상 온라인에서 오가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서비스사업자의 입장에서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유료 소프트웨어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일어난 사실과 이러한 것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으며,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방조책임을 있다고 판시하여 그 책임을 가중한 바 있다(서울 중앙지법 2008. 8. 5. 자2008카합968결정 :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012

게시판 담당자의 책임 ②

저작권법이 바뀌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우리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경우 홈페이지가 폐쇄될 수도 있는가?

●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삼진아웃제. 인터넷 이용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저작권법을 모르면 다친다”라는 인식의 확산과 일부에서는 이러한 삼진아웃제가 위험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예도 있다.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는 해비 업로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법 전송자의 개인 계정(이런 경우에도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고 있다)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홈페이지 자체의 폐지는 아니다.

정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은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삭제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고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물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여기서 상업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게시판이란 게시판 운영자가 수익을 얻거나 게시판 이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영화·음악 감상, 현금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 공간 등의 제공을 통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포털상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절차적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 게시판 정지 명령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당 사이트의 계정 정지가 아닌 인터넷 접속의 차단을 의미하는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

013

온라인 웹진 발간

모 부처 소식지 담당자이다. 주로 원고료를 주고 외부 필진의 원고를 사용하여 소식지를 만들고 있다. 이를 웹진 형태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더니 외부 필진 중 일부가 반대하였다. 이미 원고료를 다 주었는데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할 수 없나?

● 행정부처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집필진에게 원고를 의뢰하는 것을 흔히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용역계약’ 즉 ‘도급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속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아울러 저작물의 작성과 관련 도급인이 계획을 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도급인의 지시사항을 작품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구사하고 스스로의 창의와 수법에 의해 저작물이 작성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도급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 필요한 만큼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의 예방이나 용역 결과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사례에서 집필자와의 원고계약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오프라인상의 소식지 발간에 쓰이는 용도로만 한정했다면 온라인상의 소식지를 발간에 대한 이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오프라인상의 소식지 발간 대신 웹진을 서비스하는 것이라면 애초 소식지 발간에 동의한 만큼 웹진에 올리는 것에 대하여 관리자가 문제를 삼을 소지는 적어 보인다.

014

소유 건축물과 저작권

우리 부처 청사는 건축상을 휩쓸 정도로 유명한 건축물이다. 이 건물을 배경으로 하여 광고가 상당히 많이 제작되어 방영 중인데, 저작권을 이유로 광고 배경사진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

● 일단 이런 건축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부럽다.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른 건축 예술로 평가될 정도의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 창작성이 인정될 때에만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주변에 흔히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이 건축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세상에 집짓기는 이보다 어려운 것이 없을 것이다. 사례처럼 건축상을 휩쓸 정도의 건축물이라면 건축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물을 배경으로 한 광고의 제작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호텔 벽면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TV광고 제작 시 배경화면으로 약 10초간 나오게 한 광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17.선고 2006가합 104292판결). 하지만, 건축저작물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저작권법에서는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의 경우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배경으로 CF를 촬영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배경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배경에 이용된 부분이 건축물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인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부처의 청사가 건축저작물일 경우 누가 권리자인가 하는 점도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건축저작물의 설계자가 해당 부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경우라면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설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정부부처는 저작권을 이유로 사용료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015

소장 작품과 저작권

공공 미술관 직원이다. 관람객들이 전시 관람 중 사진을 찍곤 하는데 제지하기가 참 난감하다. 전시 중인 작품의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 저작권의 객체가 되는 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담겨 있거나 표현된 물체와 구분된다. 즉,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의미형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이 담겨져 있는 화폭이나 소설의 원고 또는 조각가의 사상·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대리석은 저작물의 표현을 매개한 물체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일례로 미술품 애호가가 어떤 화가로부터 그의 그림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술저작물이 표현된 화폭(매개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미술품의 저작재산권까지 당연히 양도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담겨 있는 매개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저작자의 권리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미술관에서 소장한 미술품의 경우에도 작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술관 직원이 저작권을 주장하여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사실 저작권을 이유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다).

그냥 ‘사진촬영금지’라고 써어만 있다). 다만 작가의 위임을 받아서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일견 가능해 보이거나 이러한 경우라도 사진 촬영 후의 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영리적 이용이 아닌 단순히 사적 이용을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면책되는 행위이므로 사진 촬영 자체를 저작권법에 기하여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공공 미술관에서 사진 촬영금지는 저작권법에 기하기보다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의 권리에 기하여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이 작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관람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016

소장품의 소유권과 전시

우리 부처에서 오래전부터 소장해오던 미술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모 작품의 작가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였다. 우리 부처의 소장품인데 우리가 맘대로 전시하지 못하나? 사전 허락없이 전시하면 어떻게 되나?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이는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와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저작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할 수 없다면 소유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원본 미술저작물 이외에 사본 미술저작물의 전시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원본에 한해서만 전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본 미술작품의 전시는 일정 조건하에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원본을 전시하거나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본의 감상을 대체할 수준의 정밀한 도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017

출판권의 의미

출판권이란 무엇인가?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를 말하며, 출판권을 설정받는다 함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뜻이다. 출판권은 원작 그대로 복제하여야 하는 권리이며 자신만이 출판을 허락받은 것으로, 비록 권리라고 칭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저작권과 달리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출판권은 복제권에 관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제한 규정이 준용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출판권이 설정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출판권을 설정 받은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설정 받은 것으로 본다. 출판권설정계약을 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적 이용허락과는 달리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하여 출판행위의 금지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 독점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중 설정의 방지를 위하여서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출판권자의 이중 설정 시 나중에 설정 받은 제3자가 먼저 출판권설정등록을 한다면 먼저 설정을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출판권설정계약 시에는 발행 부수 또는 계약기간·인세·인세

지급 방법 및 시기 · 인지 첩부 여부 ·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고분의 처분 · 저작물의 변경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018

판권과 출판권

보통 판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판권과 출판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영상물의 제작과 관련해서 흔히 판권을 소유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실제 저작권법상 ‘판권’이란 용어는 없다. 원래, 판권은 일본에서 ‘저작권’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용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출판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영화업계에서도 ‘판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등 우리 문화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판권’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판권은 사전상으로는 도서출판에 관한 이익을 독점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저작권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보인다.

이러한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계약서에서 이야기하는 판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전체 권리를 판권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 중 일부를 판권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영화제작자에 대한 ‘판권’ 담보 용자제도를 시행한다고 할 경우 판권의 의미는 전체적인 권리를 의미할 경우가 많을 것이고, ‘리메이크 판권’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작 영화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 내는 권리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권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방송업계에서 판권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CD나 DVD의 제작과 관련된 경우 복제권, 배포권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출판권은 판권의 일종으로서 출판물에 특정하여 독점적 ·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019

레이아웃과 저작권

모 출판사와 연간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다. 레이아웃도 산뜻하고 해서 호평 받고 있는데, 내부 사정으로 다른 회사에 출간을 맡기려고 한다. 하지만 처음 출간하던 회사에서 레이아웃은 자신들이 창작했다면서 다른 회사에서 출간하려면 레이아웃 전체를 바꾸라고 한다. 레이아웃도 저작권이 있는가?

●레이아웃에 관한 권리를 저작권법에서는 판면권이라고 한다. 이는 발행된 저작물의 창작적인 인쇄배열에 대하여 편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판면권이 인쇄물의 배열에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을 경우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실제 판면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편집저작물을 인정하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면권의 도입이 논의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판면권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이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서 아직까지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판면권의 경우 특정 면만을 부분적으로 복제해도 침해가 될 수 있는 반면 편집저작물의 경우 전체를 복제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귀결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판면권 인정의 실익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판면권이 어문저작물의 복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복사기에 의한

불법 복제로 저작자들이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실제 저작물을 출판하는 출판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출판업자들에게 판면권을 주어 직접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작권법 중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그들이 저작물의 창작성에 기여하였다기보다는 저작물을 보급하는 데 투입한 자본의 회수를 위해 보장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자본을 투입한 출판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020

출판권의 범위

정부 홍보물을 출판하는 부서이다. 모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성장과 관련한 자료의 작성을 의뢰하여 출판권을 설정 받았다. 해당 홍보 책자 발간 후 상관의 지시에 의해 이를 CD와 DVD로 만들려고 계획하였는데, 필자의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출판권을 설정 받았는데 책자 외에 CD 등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

●법문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판권의 대상은 문서와 도화만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 이를 CD나 DVD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책자 이외의 형태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태도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출판권에 대한 규정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이처럼 출판의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종이 출판과 전자 출판을 구분하여 전자 출판의 경우는 출판권 설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책자발간이 아닌 e-book 형태의 출판을 급증하고 있다.



e-book이란 'Electronic Book'의 약자로 한국전자출판협회에 따르면 “도서로 간행되거나 또는 도서로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CD-ROM, DVD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저장장치에 수록하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경유하여 컴퓨터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e-book은 컴퓨터, PDA 등을 통해 읽을 수 있는 디지털 도서를 말한다. e-book은 인쇄과정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져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CD나 DVD 형태로 만들어 제공할 수도 있다. 출판계에서는 이러한 e-book도 출판권 설정의 대상이 되기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e-book도 출판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작자와 출판자간의 계약에서 출판권 설정에 준하는 독점적 이용권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적 이용권이라 해도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출판권의 효력과는 다를 수 있다.

021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부서장 지시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제 서적의 내용을 온라인 교재로 재구성하여 활용하려고 한다. 이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출판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출판권의 대상은 문서와 도화만 해당되므로 온라인 교재에 대하여서는 오프라인상에서 출판권을 설정 받은 출판사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 출판되어 유통되는 경제 서적을 온라인상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서적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러한 편집작업을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면 이를 동일한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022

무권리자의 이용허락

정부 자료를 A출판사에 의뢰하여 판매책자로 발간하였다. 이후 A출판사는 정부의 허락도 없이 일정 금액을 받고 해당 원고를 월간지에 게재하였다. 이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을 설정받더라도 출판권은 독점배타적 이용권의 설정에 불과할 뿐 출판사가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저작권과 유사한 준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판사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만 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이 출판하도록 허락할 수는 없다. 아마도 정상적인 출판사라면 자신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서 불법임을 알고 한 행위일 것이다.

사례에서 출판사의 행위는 무권리자의 행위로서 법률상 무효에 해당되며 아울러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부처에서 민사 및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 또는 권리로써 처분한 경우 권리자 본인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는 있으므로 해당부처에서 출판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023

출판물의 수정·증감

사계 권위자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전통 공연 관련 책자를 발간하였다. 반응이 좋아 2판을 찍으려다 시의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어 수정하고 내용을 조금 보충하였다. 이를 안 해당 필자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항의해 왔는데 출판권을 가진 곳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저작권 문제는 재산권 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작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저작인격권 중 저작물 본연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동일성유지권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일지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 형식을 함부로 바꾸어 이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

다만,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저작권법에서 용인하는 건축물의 증·개축 등 부득이

한 변형에 준한 경우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의무라 해석될 것이며, 반대로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수정·증감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만 주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의 원고가 시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개작하게 될 경우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부득이하게 이를 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024

출판계약시 주의점

공무원 발령 첫 임무로 출판계약이 맡겨졌다.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 기본 출판계약서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 정부부처에서 출판사와 체결하는 계약은 양측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서로 고려할 점이 다르다 할 것이다. 정부부처의 입장에서 본다면 출판계약은 일종의 용역계약에 해당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고,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것이다.

출판권 설정계약은 저작권자가 일정 기간 출판사에게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즉 작품을 인쇄 형태로 복제 및 배포할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출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출판권이 설정되면 특약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며 이 기간 동안 저작권자는 같은 작품을 다른 출판사에 출판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아울러 출판권이 설정된 저작물을 다른 출판사가 무단으로 출판하거나 불법복제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을 설정 받은 출판사는 직접 해당 출판사에 대하여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적 혹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처 담당자는 저작권법상 출판사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할 것이다. 즉 원고를 넘겨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하고, 해당 출판물이 시중 서점 등에 절판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출판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약이 없는 한 인지를 붙여서 유통시킴은 물론 다시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도록 해야 한다.

만일 출판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출판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25

행정목적에 위한 복제

행정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출판된 책을 10부 복사하여 간부회의에 올렸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출판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입법, 행정목적에 위한 내부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게 아닌가?

●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부참고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상 허용된 저작물의 행정목적 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여야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자료가 저작권법상 면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자.

행정목적에 위한 복제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지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목적에 의한 내부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만 면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정목적이란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사 등을 결정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즉 단순히 직원의 업무참고용으로 복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이 직접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목적이라는 명칭 하에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행정목적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움을 말한다.

행정목적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실연·음반·방송) 모두가 포함된다. 저작자가 창작 후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도 행정목적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저작물 등은 행정목적에 의한 내부자료로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등을 위하여 외부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행정목적의 범위에는 행정쟁송절차, 각종 정책 심의 등을 포함한다. 즉, 행정 소송을 위한 변론서,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을 준비하거나 각종 정책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것도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는 분량 및 부수는 관련 조문의 단서 규정에 의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예컨대, 정책 입안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을 넘어서 복사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동료 직원까지 고려한 복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복사의 범위에 있어 단행본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10부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더욱 면책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례는 행정목적에 합당하지도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의 복제라는 원칙에도 부합하기 어렵다.

026

정부 발간 보고서의 저작권

산하단체에서 매년 다수 연구용역을 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상급 부처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다. 어떤 사설 연구소에서 이 보고서를 출력하여 내부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설 연구소는 정부 기관이나 그 산하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기관 등이 출판하는 책자 등의 저작권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이번 사안은 두 가지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먼저 용역결과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하는 부분과 다음으로는 국가저작물은 저작권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역은 도급계약으로 따라 수급인(의뢰받은 자)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의뢰한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무체 재산, 즉 저작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창작자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산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면 산하단체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산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국가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용역결과물은 그 종류에 따라 일회적 이용으로 그치는 것, 한 번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처와 산하단체 간에 특약을 통해 저작권재산권의 양도를 하였다면 해당 부처가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몇 가지 경우에만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예로서는 헌법, 법률, 고시, 공고 등이 해당된다. 사례의 연구용역보고서는 산하단체에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부처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보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사설연구소의 주장처럼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027

의회 등에서의 연설

시 의회 의원이다. 모 출판사가 시 정기 의회에서 내가 한 발언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한 것을 보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행정적인 자료는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가?

●우리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에서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책자로 발간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시 의회 의원이 정기 의회에서 행한 발언은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이므로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법에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였으므로 특정인의 발언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락 없이 책자로 발간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공개적으로 행한 연설 등은 당초 법 제7조 제6호에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시 국제 협약 및 다른 선진국의 예에 따라 기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을 저작권 제한의 대상

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공개적으로 행한 연설 등의 경우 법 제7조에 규정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는 보호의 범주가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사례와 같은 경우 본인의 명예훼손 등 저작권 침해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적인 제소보다는 협의를 통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에 뜻이 있다면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용은 일상에서 많다. 예를 들어 많은 팬 사이트에서 특정 가수의 공연 실황을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는 권리 침해에 해당되나 이러한 이용이 결국 당해 공연을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거둬으로써 저작자로 하여금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팬 사이트는 원저작물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보완재이다.

028

무료 공연과 저작권

우리 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음악 공연단이 시민을 위해서 길거리 음악 공연을 하였다. 해당 노래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해 왔는데 무료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주어야 하는가?

●저작권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회적 도움을 참작, 저작자만의 온전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거인의 어깨에 선 난장이가 멀리 본다”는 격언처럼 선현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즉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위하여 저

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비영리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출연하는 실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공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공연이라면, 어떠한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반대급부를 어떤 형태로든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불우이웃돕기 등 진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대급부가 있다면 권리자의 허락을 얻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시 공무원의 경우 월급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로는 보이지 않으며 시민을 위해 무료로 행하는 공연이므로 저작권법에서 인정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작곡가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참고로 저작권의 관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저작권자들이 단체를 구성, 개별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함으로써 다수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저작권 신탁관리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음악저작권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권리를 신탁하고 있어 신탁의 속성상 작곡가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상기 협회에서 탈퇴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다수 있어 저작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바도 있다.

029

무료 영화상영과 저작권

시민을 위해 매주 1회씩 DVD를 이용하여 강당에서 영화감상회를 갖고 있다. 어떤 영화사에서 대중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공짜로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인데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DVD 등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러한 것이 관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인식되곤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법.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도한 영화 상영은 주변의 대여점이나 비디오감상실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관련 사업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영화 상영이 권리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인식하에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기관의 비디오 상영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은 시중에서 구입한 판매용음반 혹은 영상저작물을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에서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용 DVD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연에 쓰이는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은 합법적으로 제작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판매용이어야 하며, 불법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음반 혹은 영상저작물을 구입하여 공연하는 것은 면책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참고로 국가기관 등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영리목적이 있더라도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어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기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030

출판서적의 요약

공무원들의 업무지식 향상을 위해 내부 동아리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업무 관련서적을 요약·발표하고 있다. 일부 요약서가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사되어 배포되곤 하는데 출판사가 이익을 제기해왔다. 행정목적에 의해 사용하는데 요약서를 배포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

● 행정목적에 의한 복제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행정목적에 의한 내부자료로써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목적에 의한 내부자료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정목적이란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사 등을 결정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즉 단순히 직원의 업무 참고용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부 동아리에서 업무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것은 행정목적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자료가 동아리 회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배포되었다면 더욱 면책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례처럼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요약하여 이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처럼 애초의 저작물을 변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 이외에 저작

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글의 제목을 변경 혹은 삭제하거나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우리 법원은 강연 내용을 녹화하여 60분간 방송하기로 약정해 놓고 40분간만 방송한 방송사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를 인정(서울고법 1994. 9. 24. 선고 92나35846호)한 바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행정목적에 해당할 경우 번역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례처럼 저작물을 요약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 아니라면 출판서적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요약이 많이 진행되어 단순히 서적의 아이디어만 남을 정도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없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031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복사기 사용료

우리 부처는 복사기를 300대 정도 운용하고 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라는 단체에서 공중의 이용에 사용하는 복사기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용료 지급 요청을 했다. 행정부처의 복사기는 행정목적에 의한 사용이므로 사용료를 면제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 사안은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서로 중첩해서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먼저 행정목적에 의한 복제는 어느 정도 허용되므로 정부부처의 복사기는 많은 경우 행정목적에 의한 복제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처 내의 복사기가 전적으로 행정목적에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예를 들어 사적 복제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으나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행정부처의 복사기에 대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복사기와 유사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사용료에 있어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복사기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은 애초 저작권법 제정 시에는 비침해행위 중 하나로 발행할 의사 없이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1957년 저작권법 제64조 제1호), 1986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 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조항의 명칭하에 별도 조항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사적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단서를 신설한 이유는 대학가 등지를 중심으로 전문복사업자에 의한 무단복제의 성행으로 출판사와 저작자의 손실이 막대하여 출판물의 무단복제로 인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이 되지 않자 그 대안으로서 절충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규정된 것이라 한다. 즉 사적복제를 일정한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반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사적복제는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032

사무실 등의 음악 사용

모 부처 총무과 직원이다. 화장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오래된 고전 노래로 하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반대해서 최신 가요가 나오도록 하였다. 음악은 개개 화장실의 기계장치에 MP3파일로 들어가 있으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음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을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비영리목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판매용음반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영리목적을 위한 공연도 가능하다. 다만, 경마장·경륜장, 여객용 항공기·선박·열차, 호텔·콘도·유원시설·백화점·쇼핑센터 등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결국, 화장실 내에서 음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다만, MP3파일을 기계장치에 저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복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복제가 공연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필수적이라면 단순히 복제만을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MP3파일을 화장실의 기계장치에 저장하여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033

판매용 CD의 방송

공공 미술관 관계자이다. 미술관에서 관람객 편의를 위해 매일 점심때에 CD를 이용하여 음악을 틀고 있다. 옆에 있는 경마장 직원에 의하면 경마장에서는 CD 음악을 트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미술관은 괜찮은지 궁금하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시중에서 구입한 판매용음반일지라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판매용음반 등을 공연하는 것을 저작재산권 행사의 예외로 하지 않으면 간단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가 반사적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중국에는 변경하더라도 시차를 가지고 해야 하다 보니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예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음반의 공연이라 해도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음반제작자에게는 공연권이 없고, 실연자에게는 고정(固定)되지 않은 실연에 대해서만 공연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시행령에서 정한 판매용음반을 공연할 때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1.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이외의 영업소에서 감상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경우
2.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4. 여객용항공기, 여객용선박, 여객용열차

5.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6.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7. 숙박업소, 목욕장

여기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술관은 보이질 않는다. 경마장은 바로 보인다. 따라서 경마장에서 판매용음반을 틀어주는 것은 위 2호에 해당되어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술관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난 4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판매용음반을 공연하는 자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연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 경마장에서는 저작자 이외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도 사용료를 주게 되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 보호 수준에 맞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비록 공연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는 아니나, 어느 정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34

영화제목과 저작권

모 부처 홈페이지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사교육이 화두라서 홈페이지의 일부내용을 사교육과 공교육 부분으로 채우면서 그 제목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로 하려고 한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영화제목이라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지 걱정하는데 사용해도 되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아니다. 영화제목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판례가 독자적인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 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

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호가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보호를 차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제호가 전혀 창작적이지 않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별론으로 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도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제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여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며, 널리 알려진 다른 작품의 제목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다른 작품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1.4. 선고 2006카합2151 결정). 라디오에서 방송된 방송극의 영화화권을 매수하여 제호가 일간지 등에 보도된 경우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미 같은 제호로서 널리 알려진 방송극으로 오인·혼동케 함으로써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대법원 1979.11.30. 자 79마364결정). 그러나 작품의 성격,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두 작품 간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처럼 영화가 아닌 홈페이지 제목으로 영화와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 두 저작물 간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상의 침해도 아니며 다른 법에서 정하는 권리침해라 하기도 어렵다.

035

저작물의 자유이용

우리 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중 일부는 네티즌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 싶다. 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표시를 하여 일반인들이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 촉진과 장기적으로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난 2005. 10. 21일 부내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방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것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있다. 이는 미국의 로렌스 레식교수가 설립한 Creative Commons가 2002년 12월 16일 만든 것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 등의 요소를 가지고 총 11개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며 각국의 사정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단체가 설립되어 보급 중에 있다.

이러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원하는 저작자와 그러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고자 하는 이용자 간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보공유라이선스 : www.freeuse.or.kr CCL : www.cckorea.org

036

판결과 저작권

법원 공무원이다. 누군가 법원 판결을 그대로 복제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판례도 판사들이 고심 끝에 내어놓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 판결에 도달하기 위해 만든 감정서 등도 저작권이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법원의 판결문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제3호). 따라서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다 이용하는 행위에는 저작권법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판례 등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이므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분야의 판결문을 독창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된 판결문을 독창적인 기준에 따라 배열 혹은 구성한 때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편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법 제7조 제4호).

한편, 판결문이 비록 저작물성이 있다 하여도 보호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판결문이 아닌 감정서 등을 보호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감정서 등은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 영역의 전문가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서 이에 대한 보호를 제외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감정인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진술한 것은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의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보호하지 않는다.

037

도서관에서의 복제

도서관 사서이다.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일정부분 저작권법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책 전체를 복사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의 책 분량을 복사하여야만 책임이 없는지 궁금하다.

●도서관에서의 복제 허용은 학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간에 접점을 찾기 위한 규정이다. 연구를 위해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복제도 자연스럽게 수반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도서관에서 단행본 전체를 복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작물의 일부분이라고 하였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의 복제가 불가능하며 다만 저작물의 성격상 그 이용에 있어서 일부 복제가 곤란한 시나 가사 등에 대해서만 전부 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분의 범위에 대하여 적어도 저작물 전체의 절반 이하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전부가 아니라면 일부 복제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1/3 이내의 복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복제의 대상으로는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라 하고 있고, 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하므로 어문저작물 이외에 도서관이 소장한 다양한 저작물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점은 미국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복제의 대상으로 어문저작물과 음반에 한

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 즉 도서관 사서(직원)이며 열람이용자가 아니다. 만약에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도서관 열람자가 직접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이 반드시 분량이나 수량을 확인해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의 전송에 대하여 알아보자. 도서관 등은 관내에서의 열람을 목적으로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시 열람자 수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도서관 등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도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것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하다.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정허락제도가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출력하거나 전송하되 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도서관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의 전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은 현재 도서관간에 허용되어 있는 전송을 충분한 준비기간을 전제로 안방도서관으로 확장하는 부분이다. 물론 전송과 관련한 사전허락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보상금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038

학교에서의 영화상영

모 중학교 교사이다. 기말시험이 끝난 후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져온 DVD 영화를 틀어주려고 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 교육목적상 필요할 경우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Divx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TV로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가?

●학교에서의 DVD 상영은 두 가지 저작권제한규정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교육목적의 이용(법 제25조)이고 다른 하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법 제29조)과 관련이 있다. 기말시험이 끝난 후의 DVD 상영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교육목적의 이용은 일부분의 이용이 원칙이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한 경우만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사례가 저작권법에서 허용한 교육목적의 이용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간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관련하여 대여점에서 빌린 VHS 테이프 또는 DVD 등도 상영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대여점에서 빌린 것을 가지고 상영하는 것이 영상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이용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Divx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TV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목적의 이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도 허용된다고 본다. 저작권법에서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말시험이 끝난 후 직접적인 수업 대신에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Divx 파일 전체를 상영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이 허용한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039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

학교 선생님이야. 수업을 위해 참고서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가?
저작권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복사를 허용하고 있는가?

● 저작권법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수업을 받는 자도 앞의 조건하에서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에는 수업주체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것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도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아울러 2009년도 법 개정 시에는 교육기관 이외에 국가 등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도 면책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지원기관의 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센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업목적의 이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지급하여야하나 고등학교 이하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수업목적상 복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관련 조항에서 복제만을 허용하고 배포는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교사나 학생 각자가 자신의 복제물을 작성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많은 복제물을 작성하여 교사나 학생에게 배

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배포를 추가하는 2006년도 저작권법 개정으로 해결하였다.

개인이 각자 한 부씩 복제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목적상 복제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복제의 경우라 해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형태이어야 할 것이다.

040

교육목적을 위한 전송

학교 선생님이야. 수업을 위해 같은 반 학생들의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여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 하였는데 교육목적이므로 시중의 온라인 자료를 올려도 상관없지 않나?
반 학생들 외에 부모님들도 해당 카페에 들어와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은 수업목적의 전송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2006년도 저작권법 개정 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부상한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복제·공연·방송 외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교육과정에 보호되는 저작물이 이용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육정보화가 가져온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단순히 전달매체의 변화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가정학습, 원격교육, 이러닝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이상 학습장소에 있어 학교라는 물리적 여건에 제한받지 않게 되었고, 교사의 입장 없이도 수업이 가능하며, 일방향적 수업에서 쌍방향적 수업이 가능해 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의 시행으로 저작권자가 예기치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는 ①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제한조치나 복제방지조치, ②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③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접근제한조치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학 수강신청까지 엄마들이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캥거루 부모, 헬리콥터 엄마가 존재하는 한 언젠가 학부모들도 교육목적 전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

041

시험문제 출제

인사 담당 부서의 직원이다. 직원 채용을 위해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온 현대소설 지문을 그대로 써서 문제를 만들어도 되는가?

●저작권법상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는 시험문제로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며 사회적 현실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로서의 이용이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단서의 영리목적 이용과 관련, 단순히 영리법인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라 해서 영리목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험문제의 작성이나 시험

실시 등에 있어 외부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하는 자를 영리목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시험문제로의 출제를 위해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개작은 할 수 없고 이처럼 시험문제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의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현대소설의 지문을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

한편, 이러한 시험문제를 온라인상에서 이용하거나 입시학원 등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이용자는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원저작자의 허락은 물론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창작성이 있을 경우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허락도 얻어야 할 것인데 학교 시험을 위해 출제한 문제의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어 학교 등이 권리자가 될 것이므로 학교 등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시험문제 중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에 인용된 저작물의 원저작자의 허락만 얻으면 될 것이다.

042

직장 내 교육목적 사용

A부처 교육담당자이다. 아침마다 하는 청사 내 영어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영어교재의 일부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이므로 허용되지 않는가?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산권 제한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각 부처가 저작권법상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러면 주체의 측면에서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못한다. 저작권법상 면책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행하는 사내 교육이 이러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업이나 지원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어교재의 일부를 복제하여 나누어주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면책규정에 해당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공동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영어교재를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043

인용과 저작권

정부 비판내용을 주로 신는 매체의 기사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기사 내용을 1/2정도 싣고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하단에 게재한 후 홍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해당 매체에서 아무리 비판을 위해서지만 자신들의 기사의 1/2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제소 의사를 밝혔는데 적절한가?

●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는 쉽지가 않다. 서로 비판하는 때도 있고 서로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사례의 경우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자. 저작권법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인용이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새로운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의 조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인용은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모습이지만 꼭 어문저작물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술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도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만 인용할 수 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만 인용이 가능하다. 즉 단순한 감상이나 연예, 오락,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란 인용되는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인용되는 저작물이 지나치게 많이 이용되어 인용되는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34839호).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의 의미는, 인용의 목적이거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인용의 방법과 관련하여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학술서를 집필하면서 글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증 또는 비평하는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목, 공표 또는 발행년도 등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법적인 인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인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실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자신이 노력하여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 아닌가?

044

연구용역 보고서의 저작권

우리 기관의 주관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맺어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중 일부 내용을 행정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내부 보고서에 인용하였는데 해당 연구를 담당한 기관에서 저작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우리 기관이 연구용역 대가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저작권은 우리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닌가?

● 행정부처에서 외부에 어떠한 일을 수행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흔히 용역계약이라 하는데 ‘용역계약’ 즉 ‘도급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속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것은 많은 용역을 발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용역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까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저작물의 작성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계획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도급인의 지시사항을 작품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구사하고 스스로 창의와 수법에 의해 저작물이 작성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도급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다. 만일 도급인이 실질적인 저작물 창작자로서 기획과 지시를 하고 수급인은 그에 따른 실제 작업만 한 경우에는 누가 진정한 저작자가 될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직접 일을 수행한 사람이 위탁자와 근로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어 해당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

하여 필요한 만큼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예방이나 용역 결과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양도보다는 일정 조건하에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행정부처와 권리자의 형평에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례에서 만일 계약서에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 경우 저작권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동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이 저작권법상 행정목적에 위한 이용에 해당하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의해 납품된 용역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행정부처에서 저작물 제작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았는데, 그 납품물에 침해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해당부처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는 용역계약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유효할 뿐 제3자인 저작자를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하여 침해에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즉 이미 용역결과물을 납품받아 일반에게 서비스하고 난 후라면 해당 부처는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아니라서 형사책임은 면할 개연성이 크지만, 민사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부처에서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그 속에 담긴 개개의 콘텐츠들이 저작권 침해물인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부처에서는 차후에 용역을 수행한 업체를 상대로 계약 등을 기초로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덧붙이면 용역결과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계약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양도나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에 의하여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 개념이다.

045

기증품의 저작권

시 산하 미술관이다. 모 유명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다수 기증하였다. 작가의 사후에 기증 도록집 발간을 준비 중인데 후손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전형적인 소유권과 저작권의 문제이다. 작가가 기증한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저작물 자체의 기증에 해당될 것이다. 저작권의 객체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의미형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이나 조각이 표현된 화폭이나 대리석은 저작물의 표현을 매개한 물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술작품의 기증은 그 미술저작물이 표현된 매개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미술품의 저작재산권까지 당연히 양도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유명작가가 자신의 저작재산권까지 미술관에 기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도계약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경우에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원작품 소유자의 전시권, 일정한 조건하의 미술저작물의 복제허용, 미술품 소장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그 소장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미술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미술품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의 허용 등이다.

결국 질문과 같이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였다고 하여도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기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품을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남는 것이며 만일 저작권이 후손에게 상속되었다면 미술관은 작품의 이용과 관련하여 후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증저작물에 대한 도록의 발간은 미술관이 미술작품의 소유자로서 미술작품의 전시·판매 목적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도록을 제작하는 경우 호화 컬러판의 감상용으로 제작해서는 안 되며, 전시장을 찾는 자들에게 전시하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한편, 이렇게 제작된 도록은 판매할 수 있지만, 실비를 회수하는 정도의 대금을 받아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다만, 사례처럼 선친이 기증한 작품의 도록을 발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선친의 유지에 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046

전승 이야기 녹취물의 저작권

우리나라의 전승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남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그 지방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육성을 녹음한 후 나중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출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는데 이미 전승되어 널리 알려진 내용이니만큼 저작권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옛것은 아름답다. 전통 설화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러한 전승자료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저작권법에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법적으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이미 보호기간이 끝난 것이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저작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설화의 녹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 다만, 전통 설화의 녹음이 다른 사람이 기존의 설화를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화를 정리한 것이 새

로운 저작권을 획득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전통 설화를 현대 어법이나 문법에 맞게 수정·변경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통 설화 등 전승자료를 저작권법 체계 아래에서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다. 각 국가 및 국가 내 지역 공동체(community), 토착민(indigenous people) 등이 보유한 민간전승물(Folklore)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콘텐츠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보호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디지털화와 컴퓨터 네트워크 등 기술력의 급속한 발전과 상업화로 인해 민간전승물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해당 이용과정에서 왜곡, 변형, 수정되어 이용됨으로써 민간전승물 자체가 태동한 공동체, 토착민 또는 이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아무런 혜택과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

047

국고보조금으로 만든 저작물

모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 포스터가 너무 훌륭하여 우리 부처 홍보지 전단에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단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항의해 왔다. 우리 부처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100% 만든 포스터인데 우리가 다시 일일이 허락받고 사용해야 하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의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 행정 부처의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앞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속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행정 부처에서 발주하는 용역결과물은 그 종류에 따라 일회적 이용으로 그치는 것, 한 번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다시 사용하거나 장기적·영구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제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부처에서 100% 예산을 투입한 포스터를 부처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중비용의 부담이고, 국고의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행사 포스터 제작을 위한 국고지원 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저작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대응할 방법이 없는 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권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굳이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약정할 필요는 없다. 용역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에서 저작권에 관한 조항(양도나 이용 허락)을 일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048

공모전과 저작권

시정 홍보를 위해 우리 시의 관광사진전 공모를 준비 중이다. 공모 당선작은 추후에 우리 부의 홈페이지나 전단 등에 사용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모가 끝난 후 우리 시가 당선작의 저작권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

●사전적 의미로 공모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노무나 역무를 제공하는 노무계약인 셈이다. 노무계약에는 고용·도급·현상광

고·위임·임치계약 등이 있는데, 이 중 공모는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75조). 이러한 현상광고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광고는 현상광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상광고는 ‘보통현상광고’ (민법 제675조 내지 제677조)와 ‘우수현상광고’ (민법 제678조 및 제679조)가 있다. 보통현상광고는 광고에서 지정된 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우수현상광고는 일정 기간 내에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후 응모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를 선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현상광고에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당선작품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실제로 여러 기관에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전 안내 내용을 보면 저작권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우수작은 주최 측이 소유한다’거나, ‘우수작의 출판권은 주최 측에 귀속하되, 주최 측은 인세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우수작은 주최 측이 이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구들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최 측에서 우수작을 소유한다고 할 경우 이는 이전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든 저작권이든 불분명하거나와 주최 측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문구대로 해석한다면 ‘우수작은 주최 측이 소유한다’라고 한 경우 우수작의 소유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뜻으로 이를 저작권 자체의 양도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모 시 저작권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받고자 한다면,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주최 측에 귀속 또는 양도 된다’는 등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또는 지역적(나라별) 기준의 조건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양도받는다는 것만으

로 아무런 조건 없는 포괄적인 양도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광고에 저작권 양도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응모작이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출판권이 설정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건부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출판권설정계약서 이용허락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여 공모 시 또는 우수작 선정 시 서명을 받아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우수현상광고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저작인격권의 양도나 허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향후 저작물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현상광고나 그에 부속하는 계약서에 ‘응모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는 ‘주최 측은 필요시 응모자의 명예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우수현상광고 시 선정되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우수현상광고의 법리상 선정되어야만 청약과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저작권의 양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모전의 경우 비록 우수작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응모작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것은 양자 간에 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최자의 요강에 따라 응모한 것으로 응모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했다고 간주하기에는 우수현상광고의 법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공모가 관행적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귀속과는 별개로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공모전 작품 선정 시 최대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049

통역녹취물의 저작권

국제 학술행사를 위해 국내 모 업체에 통역을 의뢰하였다. 학술발표 내용을 현장에서 즉시 통역하면서 해당 내용을 녹음하였고, 행사 종료 후 통역내용을 녹취하여 보고서로 발간하려고 했더니 해당 업체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라고 하면서 추가의 금액을 요구하였다. 이미 통역료를 다 지급하였는데 돈을 더 주어야 하나?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을 기초로 다시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것도 2차적저작물이라 칭한다. 물론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변형이므로 권리의 범위를 똑같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우위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차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 이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는 점에서 볼 때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통역은 번역과 같은 유형의 2차적저작물로 즉시 통역도 새로운 저작물로서 성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통역한 결과물을 녹취하여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므로 통역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기왕에 통역된 저작물의 복제에 불과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아닌 복제권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원저작자(발표자)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050

판매서적의 번역

우리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 유명 문화인사의 책을 번역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해당 책을 번역 출판하려는 출판사가 이익을 제기하였는데, 책을 복제한 것도 아니고 번역해서 내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물론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도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는 별개로 새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한 경우 원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권리침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출판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에 출판사가 출판권을 설정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이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부서 내부 자료로 쓰기 위해 번역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목적으로 허락없이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사례는 내부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행정목적의 이용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번역이용도 어려우나 만약 행정목적의 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에 의거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051

퇴사 후 저작권의 귀속

내부 소식지 발간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소식지의 성격상 본인이 쓰는 글이 상당수에 달한다. 퇴사 후 그동안 소식지에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려고 했더니 이전에 근무하던 부처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내가 쓴 글인데 이전 부처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기본적으로 저작자는 창작자인 자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를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 이는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피용자인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한 법인 등이 그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여러 사람의 협동 작업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는 저작물의 이용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법적 의제 방법을 통해 법인 등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직접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미법계의 태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법인 등에서 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세분해 보면,

첫째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 하에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업무상 얻은 지식·경험에 의해 창작하거나 자신의 계획 하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저작자가 될 것이다. 셋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다만, 개정전 법과는 달리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인명의로 공표하면서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라 해도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도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피용자가 저작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소식지의 경우 부처의 업무 방침에 의해 구상되어 근무시간에 작성을 하고 이의 공표도 부처 명의로 한 경우라면 이러한 소식지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어 해당 부처가 저작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퇴사 후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052

업무상 찍은 사진의 저작권

서울시 소속 사진사이다. 업무상 여러 사진을 찍는데 그중 한 장을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당선되었다. 시 총무과에서 직원이 업무상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시에 귀속되므로 개인자격으로 출품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타당한가?

●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진이라 해도 사용자의 기획하에 직원이 업무상 찍은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이 되어 특약이 없는 한 해당 행정기관이 저작자가 된다. 이는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했다가 행정기관으로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 자체가 원시적으로 행정기관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 소속 사진사가 업무상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저작권 귀속이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하는 경우 당선을 하게 되면 전시 등의 행위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시 명의로 출품하되 촬영자를 명시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053

저작인격권의 정의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은 크게 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상·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저

작인격권은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성질(일신전속성)을 가지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연계된 저작자의 인격적 측면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보호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나 강하게 보호할 경우 저작물의 이용에 장애가 될 수도 있어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추구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라는 양자 간의 조화가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유족은 손해배상 등 구제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은 문화유산이므로 그러한 유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단체가 존속한다면 저작재산권은 공표 후 50년이 경과하면 보호가 끝나지만 저작인격권의 경우 장구히 존속할 수 있어 단체가 저작인격권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선거 로고송의 경우 개사 등에 대한 과도한 금액 요구 등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유지권)을 이용하여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징수하는 경향이 있어 저작인격권의 재산권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054

저작 인격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분류된다. 저작권격권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표권이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창작하여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로서 저작물을 창작한 이후 한 번 행사하면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미공표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공표하면 공표권의 침해가 된다.

둘째, 성명표시권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이다. 예컨대 저작자가 처음에 예명을 표시하여 공표하였다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명을 표시하여 이용해야 한다. 예명으로 공표하였음에도 저작자의 실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실명으로 표시하는 것도 성명표시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글의 제목을 변경 혹은 삭제하거나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화의 대사를 번역하여 더빙하거나 자막을 넣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서울고법 1995.6.8. 선고 94나33110호).

055

작품의 변형

모 부서 총무과 직원이다. 건물을 돈보이게 하라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작가에게 설치 미술품을 의뢰하여 현관 앞 건물 벽에 설치하였다.

직원들이 그 설치물에 시계도 같이 넣으면 편리하겠다는 의견을 총무과에서 설치 미술품 안에 디지털 시계를 고정하여 넣었다.

이를 본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설치 미술품은 건드리지 않고 훼손도 안 시켰는데 저작권법 위반인가?

● 저작권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실제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오직 저작자만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일지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 및 형식을 함부로 바꾸어 이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저작자의 저작권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저작물의 질을 저하하는 것은 물론 저작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요건으로 하였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처벌의 대상으로는 저작권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이므로 현관 건물 벽에 설치한 미술품에 시계를 고정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변형의 의미는 원저작물 자체의 변형 이외에 첨부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저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격권 침해의 책임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구제조치나 민사 또는 형사적인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056

책자 발간을 위한 사진의 변형

우리 부서에서 행정업무편람 책자를 만들면서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진의 일부를 사용하려고 한다. 부서장이 사진의 배경색깔이 책자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포토샵을 이용하여 배경색깔을 바꾸라고 하는데 가능한가?

● 본 사례도 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경우 행정목적 이용이나 인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해당한다 하여도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이므로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38조). 동일성유지권은 원작을 그대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례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한 범위가 아니므로 권리 침해의 소지가 크다. 비록 저작물을 더 나은 상태로 이용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작가의 허락을 득할 시점에서 이러한 색깔 변경도 같이 허락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장의 명령이라 해도 위법인 것을 듣는 것은 같이 법 위반을 하게 되는 일이니 무작정 지시에 따를 일은 아니다.

057

소장 조각품의 수선

청사관리 담당 직원이다. 순찰을 돌다 보니 주차장에 놓여 있던 조각 작품의 머리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용접업체를 불러 다시 붙였다.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침해되는지 궁금하다.

●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은 좀 미묘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조각 일부를 제거하고 전시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나 조각을 완전히 파괴하였다면 사정은 다르다. 조각의 파괴 자체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며 만일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뿐이다. 하지만, 파괴된 조각을 전시하거나 그림의 일부를 찢거나 심하게 구겨서 전시한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한편, 손상된 저작물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동일성유지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원상회복 시 다른 위치에 부착하거나 잘못 부착하여 원작과 다른 이미지를 준다면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과 같이 가능하다면 원작자에게 연락하여 수선하는 것이 권리 침해의 우려가 없다.

058

정부 보고서의 저자 누락

정부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면서 실수로 외부 필진 한 명의 이름을 누락하였다. 원고는 실렸으나 이름은 없는 상태인데, 해당 필자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

●저작자의 성명은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경우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TV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라디오에서 음악방송을 하면서 작사·작곡가의 성명을 일일이 방송하는 것은 진행자와 청취자 모두에게 불편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성명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시를 낭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를 낭독하기 전에 시의 제목과 시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관행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음악의 방송과는 달리 만약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 시의 시인명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의 제목과 시만 낭독하고 그 시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면 시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게 된다.

과거에 대법원에서는 구 저작권법에 의거 성명표시권을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하는 권리이므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저작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89.1.17. 선고 87도2604 판결)한 바 있으나 의문이다.

주의할 것은 과거에는 저작자만이 성명표시권이 있었으나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시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이 주어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수나 연주인 등 실연자의 성명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059

공동저작물의 공표

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의 연구결과 발표를 같은 날 같이 하기로 했으나 그 연구기관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렸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공동저작권이라 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는 그 공동저작재산권자들의 전원 합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각 공동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지분)은 공동저작자들 간에 특약이 있다면 그것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재산권자는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지분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역시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5조1항).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행사는 대표를 정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공표권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공표 여부 결정권이나 공표의 시기와 방법의 결정 등도 공표권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볼 때, 같은 날 공표하기로 하고 다른 공동 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표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060

저작물의 변형

미술관 관계자이다. 어린이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 소장작품의 인물 배경만 남기고 색을 없앤 다음 어린이들이 칠하도록 교재를 만들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되풀이하면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전시 등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이 가능한 권리인 반면,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일지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 및 형식을 함부로 바꾸어 이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미술관에서 소장 작품을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원래 대로가 아닌 윤곽만 남긴 채 복제한 것이 해당 미술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물의 복제 시 변형의 정도가 심하여 원저작물을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는 별개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어 변형은 되었으나 원저작물과 연관성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이 될 것이다. 사례처럼 윤곽만 남긴 경우는 원저작물과 전혀 별개의 것이 될 것이며 배치 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될 것으로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른 저작물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작품을 만들 경우 표절이 성립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표현까지 차용해야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개의 학생들이 그러한 윤곽을 가지고 색칠을 하여 원작과 유사한 그림을 그렸다면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면책된다 할 것이다.

061

공연 내용의 온라인서비스

시로 승격한 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명 공연단을 초청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 행사를 열었다. 이 공연을 보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홍보과에서 공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서비스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공연단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 시에서 공연비용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

●과거에 모 기관에서 공연내용을 DB화하였으나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관계로 서비스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실황 공연의 인터넷상에 대하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먼저 실황 공연의 서비스 허락을 어떤 절차를 거쳐 얻어야 할 것인지와 이것이 별도의 영상저작물로서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공연비용을 지급했다고 하여 해당 공연물의 인터넷 서비스까지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

공연 실황의 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보통 공연을 위해서는 희곡, 음반, 미술저작물 등이 이용되며 또한 공연에 출연한 실연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자나 실연자로부터 공연 주최자가 먼저 해당 공연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서비스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락을 받았는지가 관건이며 공연 주최자라 해도 관련 권리자로부터 합법적인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인터넷서비스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연 주최자가 이러한 권리를 확보한 경우 시에서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황 공연의 촬영이 영상저작물로 성립되는지 여부이다. 공연을 카메라를 고정된 후 일직 각도로 위치나 구도의 변화 없이 촬영한 것은 단순한 공연의 복제가 될 것이고 카메라의 위치나 구도의 변화와 편집을 통해 공연을 촬영했다면 별도의 영상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영상저작물은 공연의 2차적저작물이 되어 공연의 촬영물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촬영자의 허락도 얻어야 한다.

062

공연 내용의 실황 중계

외국 유명 공연단을 초빙하여 시 문예회관에서 무료로 공연 중이다. 문예회관 객석 수가 너무 적고 공연을 보려는 사람도 많아서, 외부에 대형 멀티화면을 설치하고 공연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데 외국 공연단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항의하는데 정말 저작권 위반인가?

●WIPO실연·음반조약(WPPT) 제6조는 실연자에게 방송되지 않은 생실연에 대해 공중전달권을 부여할 것을 계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WIPO실연·음반조약 제2조는 공중전달의 개념을 “방송 이외의 모든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를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공중전달의 대부분은 유선방송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생실연의 유선방송에 대하여 실연자에게 이미 방송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중전달에서 유선방송을 제외한 부분, 즉 생실연을 확장기나 멀티비전 등을 통하여 실연 장소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중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행위(공연)에 대한 권리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도 저작권법 개정 시 실연자의 공연권을 신설한 바 있다. 따라서 실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공연 내용을 멀티화면 등을 통해 같은 건물 내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연 주관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063

길거리 응원과 저작권

시청 직원이다. 국민의 월드컵 응원 편의를 위해 시청 광장에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하고 방송화면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정말 저작권법 위반인가? 또 대기업에서 응원단에게 음료수와 응원용품 등을 나누어주면서 거리 응원을 조직하면 어떤가?

●BE THE REDS! 2002년도 월드컵 개최 시 많이 이루어진 길거리 응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범국민적 축제 행사에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가혹하긴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당시 이러한 응원에 대하여 권리자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운동경기를 촬영한 것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카메라의 구도와 위치를 변경하여 박진감 있게 표현하는 점에서 영상저작물임을 인정하는 견해가 많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연,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청과 같은 비영리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대기업에서 음료수와 응원용품을 나누어주고 길거리 응원을 조직하는 것은 영상저작물의 공연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영상저작물에도 해당 기업의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운동경기의 중계와 관련하여 식당, 술집, 병원, 여객터미널 등에서 TV 수상기를 설치하여 대중에게 보여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TV 시청은 손님들에게 무료함을 달래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오래된 관행으로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V 방영이 판매용 영상저작물과 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법

원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과 관련 음악권리자들의 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스타벅스 간의 분쟁에서 스타벅스에서 별도로 제작한 CD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의 공연이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는 판단을 한 바 있으며(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4196) 현재 항소 중에 있다. 즉 스타벅스에서의 음악 사용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1조 상의 판매용 음반에 의한 공연의 예외로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064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시가 해온 각종 성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기자 브리핑도 가졌다. 다음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의 '시정 발전란'에 올렸는데 여러 신문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해 왔다. 우리 시가 제공한 자료의 대부분이 그대로 나온 기사인데 해당 기사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기본적으로 신문기사도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확산 차원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시사보도는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 보도, 행사 내용 보도, 인사 동정이나 부고 내용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시사보도가 아닌 기획 기사의 칼럼 등은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또는 필자의 창작적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신문기사의 홈페이지 게재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 2006년도 저작권법 개정시 언론사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에 대한 전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언론기관만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인이 전제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기관과 관련한 신문기사라 하더라도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신문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칼럼 등 외부 기고가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기고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사를 직접 게재하는 대신 제목을 올려놓고 클릭할 경우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단순 링크(simple link)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사례에서처럼 보도자료를 기초로 신문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일률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보도자료 그대로 기사가 났다면 저작자가 해당 부처이므로 당연히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보도자료를 기초로 신문사에서 새로운 표현을 추가하여 작성한 기사라면 부처와 신문사 간의 공동저작물이라 할 것으로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기사를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하고자 한다면 해당 신문사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065

게시판 글의 저작권

시 홈페이지 담당자이다. 우리 시의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정발전의 주요 지적사항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자 한다. 이 경우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글들도 모두 글을 쓴 민원인에게 일일이 동의를 얻어 출판해야 하는가?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특허 등에서의 진보성

이나 고도의 예술성과 다른 것으로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의 창작성을 말한다. 이처럼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만 요구하므로 짧은 글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물론 관례적으로 저작물의 제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하나 이러한 제명의 수준이 아닌 민원을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원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 당시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이러한 글들을 모아 자료집을 출판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민원 글이 저작물이라 간주하고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출판하는 것이 향후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 될 것이다.

066

정부 홈페이지 링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관광정보를 모아 서비스하고 있다. 관광정보를 모아 영리적으로 서비스하는 모 홈페이지를 보았더니 우리 시 홈페이지 해당 정보를 링크해서 걸어 놓아 유적지 아이টে를 클릭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가 뜨면서 우리 시 홈페이지의 해당 정보가 나타나게 해 놓았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

●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링크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링크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딥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단순 링크는 단지 해당 주소로 연결만 하는 것이고, 딥 링크는 한 단계이상 여러 단계의 심층을 연결하는 것이며, 프레임 링크는 링크를 한 화면상에 링크된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고,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이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링크는 단지 홈페이지 제작자가 올린 문서에 링크하려는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복제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며, 당해 링크사이트의 문서 등 정보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웹서버에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린 것이므로 링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전송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만약에 링크를 하는 것을 전송으로 본다면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도외시한 것으로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딥 링크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연결의 경우에 비하여 광고수입 등의 감소가 올수 있다는 점은 예상되나 그렇다고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링크 자체를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침해의 소지가 적은 단순 링크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단순 링크를 아웃 링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링크에 의한 권리침해 책임문제는 직접적인 행위 주체인 링크를 거는 쪽에서 지고 링크의 대상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서울 고법 2008.9.23. 선고 2007나70720판결).

067

계약과 저작권

A디자인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리 기관의 홍보물을 만들었다. 가격이 너무 비싼것 같아서 다음 해에 다른 B회사에 홍보물 인쇄를 맡겼는데 A디자인회사에서 미술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반이라고 항의를 해왔다. 이미 표지 디자인 등의 금액도 다 지급했는데, A디자인 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나?

●디자인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홍보물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저작권은 수탁자(디자인회사)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저작권을 양도받는다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 것이 국가 예산을 들여 용역계약을 한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 있다. 용역계약서에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

다음으로, 비록 저작권은 수탁자인 디자인회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납품받은 홍보물을 똑같이 인쇄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애초 디자인회사와의 계약은 디자인이라는 저작물 작성과 이의 복제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양자 간에 저작권이나 이후의 복제에 대한 별도의 양해가 없었다면 처음 계약 수량만큼의 복제를 전제로 한 저작물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 수량을 초과한 인쇄에 대하여는 다시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068

신문 스크랩과 저작권

모 부처 공보관실 근무자이다. 우리 부처 관련 기사를 매일 스크랩한 후 복사하여 간부진에게 배포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가?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자는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 이를 JPG 파일로 만든 후 내부 폐쇄망에 매일 아침 올리거나, 특정 간부에게만 메일로 송부하려고 한다. 이 경우는 어떤가?

●신문스크랩의 복제는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 아닌 한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단순히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목적 복제에 포함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신문스크랩의 복제 배포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다.

해당 기사를 파일로 만들어 내부망에 올리는 것은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 내부망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허용된 행위인지는 내부망에의 게재라 해도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되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내부망에 게재하는 신문스크랩에 대하여 명확한 권리처리 없이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현재는 각 신문사와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간의 계약과 서비스회사와 해당부처와의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부 직원이 검색 등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메일 송부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록 메일이 사적 정보 교환의 수단이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송신하는 경우에는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069

공연과 저작권

시장의 지시로 사설 공연단에 공연료를 지급하고 매월 정기음악회를 열고 있다. 곡목은 슈베르트의 곡에서부터 최신가요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최신가요의 작곡가가 허락 없이 자신의 곡이 연주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해왔다. 과연 저작권법 위반인가? 위반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이미 출연료를 지급했으므로 작곡가와의 문제는 공연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흰히 읽힌다. 이러한 유형의 음악회 개최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될 것이다. 만약에 공연단에게 공연료가 지급되지 않고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비영리목적의 공연에 해당되어 면책이 되겠으나 공연료를 지급한 결과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공연이 되었다.

문제는 시에서 공연단에 충분한 공연료를 주었음에도 공연단이 저작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급계약에 의해 시행된 결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은 없다고 하기 어렵다.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더라도 저작자를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하여 침해에 책임이 없음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아니라서 형사 책임은 면할 개연성이 크지만, 민사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당 시에서는 차후에 공연단을 상대로 계약 등에 기초로 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

070

통계와 저작권

통계를 담당하는 부처이다. 우리 기관에서 만든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업체에서 상당 부분 인용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다. 해당 출판사는 공정한 이용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통계 정도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저작권법에서는 편집물의 일종인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데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5년간 가진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한편,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일부와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거나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도 제한되어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된다.(저작권법 제94조) 따라서 인용된 분량이나 형태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라면 민간업체의 이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정부저작물이라 해도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정부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071

신문기사와 저작권

정부 홍보지를 만들면서 출처를 명시하고 모 신문사 기사 한 줄을 사용하였다. 한 줄 정도이고 출처까지 명시했으므로 문제없는 건 아닌가?

●구체적인 이용의 형태가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사를 사용한 것은 인용의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법 제28조). 합법적인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며, 그 공정한 관행에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인용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발행 또는 공표 연도 등을 표시해야 한다.

사례와 같은 정부 홍보지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사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문기사의 이용과 관련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이 인터뷰했거나 자신의 활동을 다룬 기사들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혹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물론 비영리목적의 이용이고 게시된 저작물에 대하여 본인이 인터뷰한 경우 공동저작물이 될 가능성, 출처를 명시하는 등의 참작사유는 있으나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형태의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정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072

저작자 허락 없는 기사 작성

모 부처 공보관실 근무자이다. 주요한 정부정책 보도자료를 작성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 신문사 기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해당 자료를 필사한 후 이를 다음날 1면 톱으로 기사화하였다. 보도자료를 정식으로 배포하기 전이므로 해당 기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 해도 명령, 고시 등 보호하지 않는 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보도자료는 이러한 보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그 주체는 언론기관에서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보도자료를 허락 없이 신문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성명표시권 침해문제도 발생한다. 다만, 어차피 일반에 공표하려고 했던 자료이므로 신문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적 잣대만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해당 기자로서는 특종을 건진 셈이다.



073

보도자료와 저작권

공보관실 직원이다. 보도자료와 함께 사진 몇 장을 같이 배포하였다. 모 언론사는 해당 행사 기사에 사진을 사용한 후 회사 DB에 올려놓고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이후의 다른 기사에 사용하곤 하는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사진저작물은 사진기를 이용하여 피사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사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에 의한 창작이라는 요소가 작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일반저작물에 비하여 보호가 약했다. 현재는 다른 저작물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진의 저작물성은 그림보다는 좁게 해석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에서도 광고용 카탈로그에 실린 순수 제품사진에 대하여 사진 촬영의 목적이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사진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판결).

하지만, 최근 사진이 예술작품의 하나로 그 산업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고 저작권법상 별도의 취급을 받지 아니하는 점, 사진 촬영에 있어 촬영자의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의 한계를 준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진의 저작물성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사진은 보도자료와 함께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러한 사진을 회사 DB에 올려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기사에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074

착오로 인한 이용허락

모 단체에서 『한국의 공연 문화』라는 책자의 발간을 요청해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를 넘겨주었다. 출판 후에 그중 일부 사진 등이 정부가 저작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모 단체는 정부를 신뢰하여 책을 출판했다고 하면서 면책을 주장하고,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정부보다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 좋은 일을 하려다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사례이다. 유사한 사안으로 도급계약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든 경우를 참조하면 될 것 같다. 도급계약에 의해 납품된 용역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용역의 수행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자로서는 발주처에 대하여도(즉 용역결과물이 귀속되는 주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우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체에서는 정부를 신뢰하고 자료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자료를 이용하여 책자를 출판한 경우 그 속에 담긴 개개 콘텐츠들이 저작권 침해물인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해당부처도 착오로 인한 이용허락이라는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자는 단체와 해당부처 모두를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침해의 정지 청구나 손해배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075

이중허락

정부 홍보물을 만들면서 A출판사로부터 독점적인 이미지 공급계약을 맺었다. 홍보전단이 완성되어 배포되는 시점에 일반 기업체인 B사가 신문에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 공익광고를 실은 것이 발견되었다. 알아보니 A출판사가 정부와 독점계약을 맺고 나서 B사와 다시 일부 이미지의 이용허락을 한 것이었다. 이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이 주이다. 이중 양도는 이중 양도에 대하여 그나마 방어수단이 있다. 즉 저작권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이중 계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양도받은 사항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나중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저작물의 이용허락 중 등록이 가능한 것은 출판권 설정뿐이다. 저작권법상 등록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따라서 이용허락 중 출판권 설정을 받아 등록한 경우에만 이중 이용허락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출판권 설정 외에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에는 독점적으로 허락받는 것과 비독점적으로 허락받는 것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허락받은 사람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후자는 허락받은 사람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은 어느 저작물을 혼자서만 이용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수단이고, 후자의 방법은 다른 사람도 같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 활용하는 수단이다.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이중 허락한 경우에 독점적 허락을 받은 자나 비독점적으로 허락을 받은 자 모두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독점적 허락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이중 허락을 한 저작권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비독점적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설정출판권이 아니면, 즉 일반적 또는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출판권은 저작권법상 등록할 방법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없으며, 오직 민법상 계약이론으로 처리될 뿐이다. 즉 독점적 이용허락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는 못하며 저작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사례의 경우는 저작권 양도나 출판권설정이 아닌 만큼 이중 이용허락에 대하여 저작권법으로 따지기는 어렵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사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076

감수자의 권리

공보관실에 근무하면서 기관장의 축사 등을 운문하거나 감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출판물의 발간 시에도 감수하고 있다. 감수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사전적 의미에서, 감수자는 “책의 저술이나 편찬 따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수자가 사전적 의미에서처럼 단순히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에 그친다면 감수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행을 보면, 때로는 감수자가 초고를 상당 부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수자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즉, 감수자는 초고의 저작자와 함께 공동저작자가 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감수자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감수자가 어느 정도로 초고에 대하여 창작적인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례처럼 공보관실에 근무하면서 기관장의 축사나 출판물을 감수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어 작성자나 감수자 모두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077

청탁 원고의 재이용

정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외부 필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3월호 소식지에 게재하였는데 다른 부처에서 그 내용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게재 요청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5개 부처의 소식지에 같은 글이 실렸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최근 각 분야에 표절시비나 표절의혹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많았는데, 한때 ‘자기 표절’이라는 말이 등장한 적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표절이란 하나의 원고를 여러 매체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일부 공직 후보자의 경우 결격사유로 작용하여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처럼 발표하는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등의 침해는 물론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 자신의 원고를 다른 매체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이므로 일단 표절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연구윤리 등 윤리적 문제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078

로그송

기존 음악을 짜깁기해서 부처 로그송을 새로 만들려고 전문업체에 의뢰했더니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왔다. 부처 내 음악을 전공하던 직원이 있어서 로그송 제작을 맡기려고 하는데 음악저작권자 등에게 별도로 권리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작사와 작곡의 결합저작물로 본다. 우리 법상 공동저작물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나,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사·작곡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합저작물로 보는 것이 다수이다. 물론 공동저작물이든 결합저작물이든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저작자 모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작사나 작곡 등 음악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자의 허락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그송의 경우에는 기존의 작곡에 새롭게 가사만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개사한 로그송의 이용이 많다. 박모 가수는 선거로 고송 700여 곡을 불렀지만, 해당기관에 미리 도전 신청을 하지 않아 기네스 등재에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개사하는 형태의 로그송을 만들 경우에는 작곡가로부터는 저작재산권의 허락을, 작사가로부터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만약에 개사한 가사가 원래의 것과 전혀 다르다면 작곡가로부터의 허락만 받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사례처럼 여러 곡을 짜깁기하는 경우라면 작사가, 작곡가 모두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많은 작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하고 있으므로 동 단체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개사하는 경우에도 작곡가의 저작인격권 침해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작사가, 작곡가 모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079

소장품의 이미지 서비스

미술관 관계자이다. 소장 작품의 일부가 저작권 협의가 안 되어 아주 흐린 이미지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고화질 파일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관건은 온라인상의 서비스가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수준으로느냐에 달렸다. 비록 흐린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미술 저작물의 소개가 아닌 단순한 감상을 위한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술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것과 관련하여 만약에 인터넷상의 이용이 실제 작품 감상에 준할 정도의 품질이라면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크겠으나 작품이 흐려서 잘 안 보이거나 크기가 작아서 원본의 감상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작권침해의 소지는 적다고 할 수 있겠다. 법원에서도 검색사이트에서 사진작품의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축소된 형태로 목록화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6.2.9.선고 2005도7793판결).

080

전시회 도록 발간

우리 부처 소장의 작품을 가지고 자그마하게 식당에서 전시회를 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팸플릿 형태의 화보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각 부처에서 소장한 미술작품을 항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전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이는 미술품의 특성상 소유자의 소유권

을 저작자의 전시권에 우선하여 존중하는 것이라 다만 항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전시는 금함으로써 저작자와 소유자 간의 권리 조화를 위한 조항이다.

사례에서처럼 식당에서의 전시는 일반인의 출입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시회로써 일반적으로 항시 공개된 장소라 함은 길거리나 공원 또는 건축물의 외벽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전시회에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도록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원래 미술작품의 소장자가 판매 목적을 위한 전시 등을 위하여 도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록은 어디까지나 미술전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전시된 작품의 특징 등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정도이어야만 하며 감상용으로 사용될 정도여서는 안 된다. 때에 따라 초호화 컬러판 도록을 만들어 판매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도록은 실비 정도의 회수를 위하여 판매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영리 목적을 위하여 판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도록의 제작 판매와 관련하여 법이 정한 한계를 넘는 사항의 도록을 만들려고 한다면 사전에 작가의 허락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081

행정 보고서의 사진 사용

건설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PPT를 만들면서 인터넷상의 건축사진 몇 개를 삽입하였다. 나중에 이를 안 해당 사진작가가 이의를 제기해왔다. 간부진 몇 사람에게만 보고한 단순 보고서이고, 행정목적만을 위한 것인데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부참고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저

저작권법상 허용된 저작물의 행정목적 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여야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자료가 저작권법상 면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만 한다.

행정목적을 위한 복제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행정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써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정목적이란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사 등을 결정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즉 단순히 직원의 업무참고용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이 직접적인 의사 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목적이라는 명칭 하에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행정목적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움을 말한다.

행정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실연·음반·방송) 모두가 포함된다. 저작자가 창작 후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도 행정목적을 위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저작물 등은 행정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등을 위하여 외부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행정목적의 범위에는 행정 쟁송 절차, 각종 정책 심의 등을 포함한다. 즉, 행정소송을 위한 변론서,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을 준비하거나 각종 정책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것도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는 분량 및 부수는 관련 조문단서 규정에 의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예컨대, 정책 입안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을 넘어서 복사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동료 직원까지 고려한 복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복사의 범위에 있어 단행본 전체를 복사하

는 것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처럼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PPT를 만들면서 인터넷상의 건축 사진 몇 개를 삽입한 정도라면 행정목적상 이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082

행정정보공개와 저작권

시에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어떤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를 하면서 이미 신청한 다른 업체의 건축신청 관련사항을 요청하였다. 정보공개를 할 경우 다른 업체의 건축도면 등도 복제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 도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 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문서 등을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나?

●이는 행정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어느 법을 우선시켜야 하는 지가 중요하나 양 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다. 시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만약에 첨부된 건축도면이 미발표된 것이라면 이는 건축설계자의 공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등의 경우’ 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 그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건축도면을 제출받은 것은 행정기관이 건축과 관련한 지도·감독의 목적 및 증빙자료로 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표권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미공표저작물의 공개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할 것이다.

이처럼 양 법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법에서 저작권법상의 공표권과 관련한 문제는 공개의 대상에서 미공표저작물을 제외하거나 일본처럼 저작권법에서 미공표저작물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는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일본저작권법 제18조 제3항, 제4항)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083

촉탁 사진과 저작권

정부광고를 찍기 위해 외부 전문 사진가를 불러 우리 부의 청사 사진을 찍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나중에 외국의 다른 부처와 자매결연식이 있어서 해당 사진을 보내고, 그 외국 부처와 우리 부의 소식지에도 실었는데 사진작가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제소한다고 한다.
그 사진의 저작권은 우리 부가 가지는 게 아닌가?

● 사진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그동안 소비자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사진관에서 원판 필름을 보유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인화는 해당 사진관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들이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다시 사진을 찍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사진에 저작권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원판의 소유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사진의 저작권이나 원판의 소유문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촉탁자와 사진사 간의 권리문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는 일반적인 위탁관계의 저작권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사진사에게 귀속한다. 다만 이러한 사진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

하여 촉탁자(정확하게는 피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초상권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원판 필름의 소유를 누가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진사는 자신이 저작권자라는 이유로 원판 필름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촉탁자는 원판 필름의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필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2004년 11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여 고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①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②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다”라고 정리하였다. 즉 사진원판의 문제는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소유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증명사진이나 기념사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판의 인도 여부는 계약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저작권은 사진사에게 잔존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별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당초 광고제작만을 위해 사진을 이용할 것을 허락받았다면 소식지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는 행정부처로서는 번거롭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최초 계약 시 해당부처의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084

유족의 승인

공공 미술관 관계자이다. 전시회의 작품 이미지 컷 사용을 위해 작고한 작가의 유족에게 이용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유족이 너도나도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소멸한다. 상속의 경우는 민법상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확히 상속받은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미술관에서 작품의 전시와 관련한 안내 도록을 위해 이미지 컷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에서 원본을 전시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의 감상을 대체할 수준의 정밀한 도록이 아니라면 유족의 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저작인격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보호하지 않으나 일정한 경우 즉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인정되었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나 인격적 이익을 청구할 권리를 유족에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족으로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로 비속은 손자까지 해당된다.

085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보호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가?

●저작물은 일정한 기간만 보호를 받으며 이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공유의 영역에 놓이게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저작물은 선인들의 업적을 기반으로 창작되는 것이므로 그 성과를 온전히 모두 저작자의 것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창작에 대한 동기 부여가 끝나면 공유의 영역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그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첫째, 창작자의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 등을 표시하여 공표하는 이명저작물이나 아무런 이름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하는 무명저작물과 둘째 개인이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단체·기관 등이 창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 및 셋째,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는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아울러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시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는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는 맨 처음 음반을 발행한 때, 방송의 경우는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하는데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기간이 변경되어 어느 시기에 공표되었는가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다. 1987년 7월 1일 이전의 실연과 음반은 저작물이므로 구법(1957년법)에 의거 저작자 사후 30년간 보호하고, 1987년 7월 1일 이후 1994년 7월 1일 사이의 저작인접권은 20년간 보호하며, 1994년 7월 1일 이후의 저작인접물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086

보호기간이 다른 외국 저작물 사용

산하 미술관에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이미지 사진을 이용하여 도록을 출판하려고 한다. 전시 작품의 작가는 50년 전에 작고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자기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다른 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충돌할 때 그 나라의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나?

●국제협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제협약의 보호기간이 최소한의 보호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간 저작물을 보호한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0년 더 길게 보호한다. 따라서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국가별로 보호기간이 다른 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협약상의 내외 국민 동일 대우의 원칙에 의해 자기 나라 저작물을 보호하는 정도의 보호를 하면 무방하다. 다만, 상대국보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짧은 경우 상대국 기준으로 아직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가 속지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비록 외국에서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저작물일지라도 국내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될 뿐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 70년이 안 된 유럽이나 미국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이용은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이

해당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만약에 상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고 있다면 상호주의에 의거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087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 사용

환경 관련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부서장이 10년 전에 출간된 외래어종의 폐해에 관한 외국서적과 국내서적을 주면서 책자 발간을 협의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출판사 등을 통해서 해당 저작자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이 경우 책자를 발간하는 방법이 있는가?

●오래전에 발간된 저작물이라 해도 나중에 긴요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잘 모른다거나 저작자를 알더라도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허락 없이 쓰는 것은 향후에 저작권 침해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나 소재를 잘 모르는 경우에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일단 저작물을 이용하고 난 후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함부로 저작물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필요한데 권리자를 모른다고 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저작권자나 이용자 나아가 문화산업계에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법은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란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안다고 해도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자의 주소 등을 문서로 조회하였다는 사실,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전국을 보급망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법정허락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자는 법원에 저작권료의 공탁을 한 이후에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088

사망자의 저작물 사용

꽃 박람회에서 희귀 꽃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금강산에서 찍은 희귀 사진이 주요 전시품이다. 하지만, 그 사진작가가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도 찾을 길이 없는데, 이 경우 전시할 방법이 없는가?

●법정허락제도란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안다고 해도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진작가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허락을 받을 요건은 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은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여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법정허락의 요건이 일반인이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불법이용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는 점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자를 찾기 위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권리자를 찾아 저작권료를 협상하는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실제 법정허락의 수는 연간 몇 건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기도 했고, 최근 이동통신사의 법정허락 신청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권리자의 존부나 소재파악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허락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실제 법정허락을 하였다든 사실을 권리자가 알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용자가 공탁한 저작권 사용료가 결국 국고로 귀속되고 말 것이라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089

보호되는 외국 저작물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저작물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이처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 협약(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그리고 WIPO저작권조약(WCT)에 각각 가입되어 있다. 이들 협약은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저작물이 내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이다.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들은 비록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일지라도, 회원국에 상시 거주하는 비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인의 저작물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비회원국에서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회원국에서 발행된 비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들은 비회원국에서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회원국에서 발행된 비회원국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회원국에서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비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해당 비회원국에서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해당 비회원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내국인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만약에 외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형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090

북한 저작물 사용

통일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 문학서적을 짜깁기하여 책자로 발간한 후 교육교재로 사용하려고 한다. 북한과는 저작권 교류가 어려운 만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그냥 써도 되지 않나?

●한때 북한저작물의 무단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북한 저작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보호된다. 첫 번째로는 헌법상 근거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 실질적인 효력적용은 불문하고 법적으로는 북한도 우리 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우리 대법원도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존중하고, 이 조항에 따라 북한도 우리 헌법상의 영토에 포함해 북한저작물에 대하여도 우리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에서도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한 헌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법은 당연히 북한에 미친다고 한 바 있다(서울민사지법 1989. 7.26자89카13692 제50부 결정).

두 번째로는 국제법상 북한 저작물의 보호이다. 국제법상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바 1991년 9월 북한은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UN에 남한과 나란히 가입하였고, 각종 국제협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은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한 후,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도 2003년 4월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에 의거 우리는 회원국으로서 북한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국제협약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저작물이 북한에서 보호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상호주의에 의해 북한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091

부처 폐지와 저작권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부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 경우에 우리 부처가 가지고 있던 각종 보고서 등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

●저작권법 제49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중 하나가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부처가 폐지될 경우 그 부처의 권리 및 의무는 다른 부처 또는 신생 부처로 이관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비록 부처가 폐지되었다 하여 당연히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행정부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개별 법인이 아닌 국가소유가 되는 만큼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권리의 승계자가 없이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되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가 국가에 귀속하고, 권리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가 소유라고 해서 응당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092

초상권과 저작권

우리 부처의 홍보대사로 유명 연예인을 초빙하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도중 우리 부처 소속의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우리 부처의 홍보 전단에 사용하였는데 그 연예인 기획사에서 초상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다. 우리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므로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것인가?

● 초상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입각하여 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호되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초상과 관련한 규정은 있으나 이는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규정이 위탁에 의한 초상사진의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규명과는 무관하게 초상인의 동의 없이는 사진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초상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상의 이용과 관련하

여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초상권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 또는 모습을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혹은 공개 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며, 또한 이러한 이용 행위를 금지할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 법원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가 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호)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는 보호가 광범위하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초상권 보호가 약하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미 보호할 초상이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명인의 경우라도 그 초상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이익 측면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 데 오늘날 영미에서는 이를 순수한 인격적 권리로서의 초상권과 구분하여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스포츠맨·연예인 그 밖의 공인 등과 같이 유명인의 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 등을 광고 등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로서, 초상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 법원은 프로야구선수들의 성명과 개인기록을 그대로 사용하여 휴대전화용 야구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유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서, “...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자신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들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원고들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서울지법 2006.4.19. 선고 2005가합80450호)하였다.

따라서 만약에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홍보 전단에 사용하는 것이 비영리적 행위라면 어느 정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더군다나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경우 초상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위촉 조건에 의해서 사전허락을 받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093

패러디와 저작권

우리 부처 업무에 불만을 품은 네티즌이 우리 부처 홍보 포스터의 일부를 개작하여 온라인에 올렸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패러디이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러디는 면책되는가?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치인의 사진을 패러디하여 정치적 현실을 풍자하거나 기존의 저작물을 패러디하여 풍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영화 제목 ‘황혼에서 새벽까지’를 패러디해서 ‘황홀해서 새벽까지’라는 비디오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 이것이 정말 패러디인가?

패러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원작품 자체를 직접 풍자하는 것으로, 이를 ‘직접 패러디’ (direct parody)라 한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인데, 이를 ‘매개 패러디’ (vehicle parody)라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패러디의 경우, 패러디가 풍자와 비평이라는 요건을

구비하는 한 미국에서는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비평을 위한 인용’으로 보는 경향(2001. 11. 1., 서울지방법원, 2001카합1837호)이 높다. 그러나 비평을 위한 이용으로 본다면 저작재산권만 제한되는 것이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매개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이용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패러디를 별개의 독립저작물로 인정한다 해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패러디 자체를 저작권 제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우리가 흔히 패러디라고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패러디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기존의 작품을 희화화하는 것은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부처 업무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홍보 포스터를 우스꽝스럽게 개작하는 것이 패러디라고 하긴 어렵다.

법원에서도 원곡을 토대로 원곡에 대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점, 이용의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어선 점,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패러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11.1. 결정 2001카합1837 판매금지등 가처분).

094

민사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저작권을 침해하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먼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그리고 보호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는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민사구제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구제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민사구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를 고의로 했건 과실로 했건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당한 사람이 그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은 권리자가 질 것이나 법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저작권 침해예방청구권 및 저작권 침해정지청구권이다. 침해예방청구권은 아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침해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침해정지청구권은 현재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울러 이처럼 침해예방이나 정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효가 종료되기 전에 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그리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되어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에 사죄광고 요구가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1.4.1. 89헌마160 전원합의부)을 참작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095

형사적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민사구제 이외에 형사구제도 받을 수 있다. 형사구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소추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제 수단이다. 형사 소추를 당한 침해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데,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된다. 저작권법상 형사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 침해죄이다.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저작권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

둘째,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권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중개를 한 자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등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은 몰수한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죄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구제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제230조)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소시효는 경우에 따라 3~5년이다(제249조).

096

저작권 중재

민·형사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가?

●최근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 급증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저렴하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정식 재판절차보다는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알선과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현재 저작권 분쟁에 관한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조정조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에 의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신청은 저작권을 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침해를 한 사람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신청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조정하게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1개월 1회에 한하여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법 통합으로 기존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알선제도를 반영한 바 있다. 알선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저작권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알선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간이조정제도이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저작권 등의 경미한 침해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조정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점과 일부 저작자의 경우 형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활성화의 한계가 되고 있다.

097

침해구제 조치

모 부처 계약 담당 직원이다. 모 출판사에서 우리 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여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 우리 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민사구제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 많은 만큼 일반 저작자들처럼 민·형사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알선이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매액에 대한 일정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징수하는 방법이다.

098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발 여부

우리 부처에서 보고서 책자 발간 중 실수로 외부 발간 책자의 내용이 일부 그대로 들어가 버렸다. 이를 안 저작권자는 행정상의 실수라고 하면서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고발한다고 한다. 저작권 침해도 당사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가?

●형법상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표시이고 고발이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시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당사자나 아니냐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의 요건이 된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나 이 이외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례의 경우 부처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는 영리목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아울러 상습적이라 할 수 없어 친고죄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저작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으므로 비록 제3자가 고발한다고 하여도 법적 문제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비친고죄로 규정한 범위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형사 소추가 가능한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099

저작권법 위반과 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 외에 형사기관의 직접 인지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죄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구제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이제 저작권 침해가 단순히 개인적인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넘어 산업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저작권 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한편, 친고죄의 부작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인 문제를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침해자를 압박하여 해결하려는 권리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속칭 영파라치 사건으로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영화를 업로드한 사람에 대한 신고처리 및 고소를 통해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으로서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줌으로써 영파라치 시행 첫 날 1,000여 건의 신고로 서버가 다운되고 이후 일 평균 1,000여 건의 신고를 받아 무차별적인 고소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저작권 보호의 취지는 좋으나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법적 조치 이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대검찰청과 협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미한 저작권 위반 사안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될 가능성과 저작권법상 형벌조항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수단으로 활용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 제기가 있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실태가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진 상황에서 선불리 형사처벌범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처럼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여 민사적인 구제를 원활히 하고 일정 규모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최근 한미 FTA 협정의 타결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0

불법 복제 프로그램사용과 기관장 책임

모 정부 사업소 기관장이다.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쓰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에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발견되어 해당 소프트웨어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경우 해당 직원만 처벌받는지, 당해 기관장도 같이 처벌받는지 궁금하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은 일반적인 저작물의 사적복제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일반 저작물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 면책하고 있다). 즉 장소적 한계와 인적 한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책이 되므로 사업소에서 복제하는 것은 개인적 목적이라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의 한계만 다른 저작물의 사적복제 한계와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 시 기존의 관행을 존중하여 달리 규정하게 되었다. 실제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등의 보호 압력이 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직장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하여 저작권 침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가 그 대상인 바, 여기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어떤 것인지 중요하다. 민법 제756조에는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 '사무집행에 관하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89712 판결).